12

2019

• 통권 436호 •

법률구조를 통한
법률복지사회 구현
우리 사회의
모든 가정과 함께

가정상담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KOREA LEGAL AID CENTER FOR FAMILY RELATIONS NEWS LETTER • ISSN1227-7568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SNS

트위터▷ https://www.twitter.com/LegalAidCenter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korealawhome

지난 11월 21일 상담소의 2019년도 정기 후기 이사회가 열려 2020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그리고 인사규정 · 복무규정 개정안에 대한 심의 · 의결이 이루어졌다. (관련기사 31면)

11월 2일부터 3일까지 양재동 더케이서울호텔에서 제48회 "나, 너, 그리고 우리 – 행복찾기 부부캠프"가 열렸다. (관련내용 20면)

가정상담12월호-내지 2019.12.5 3:44 PM 페이지3 CTP-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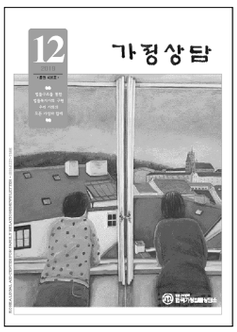

표지글씨 | **박병호** 서울대 명예교수

표지그림 | **이현혜** 평생회원
〈프라하 구경하기〉

4 • 이 달의 메시지

6 • 특집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창립 63주년 기념 심포지엄 ❷

20 • 가정폭력상담실

24 • 교육부

26 • 기획연재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00년을 향해 ⓴

28 • 인터넷 상담

29 • 좋은 책
아이들의 계급투쟁

30 • 결혼과 인생(202) 영화 이야기
82년생 김지영 _ 김용언

31 • 상담소 소식과 상담통계

34 • 지부 소식과 상담통계

36 • 백인변호사단 소송구조

발행인 겸 편집인 ·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곽배희 | 인쇄인 · 동아서적(주) 대표이사 이상업 | 발행처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출판부 (07239)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6 가길 14 · 전화 1644-7077 · 전송 02-780-0485 | 1987년 1월 28일 제3종 우편물 (나) 인가 / 2019. 12. 10(매월 10일 발행) / ISSN 1227-7568

이 달의 메시지

다사다난했던 2019년을 보내며

더 공정하고 정의로우며 아울러 배려가 있는 사회를 향하여

곽 배 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기계적인"이라는 말을 참으로 많이 생각한 한 해였습니다. 우리 사회가 지난 반세기에 걸쳐 급속하게 산업화, 민주화의 시대로 변화하면서 자연스럽게 다양한 분야에서 '문화지체'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리하다 보니 사회 곳곳에서 공정함이나 정의로움 혹은 평등과 같은 가치가 뿌리내리지 못해 많은 폐해를 낳았으며 이는 지금 이 시점까지도 현재진행형의 상황입니다. 학업이나 취업현장에서 이 부분은 특히 첨예한 문제가 되어 자녀의 진학이나 취업문제가 사회 지도층의 발목을 잡는 일들이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보다 공정한 절차를 위한 노력들이 사회 각계각층에서 법적, 제도적 정비를 거치면서 나름대로 자리잡아가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더 투명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향해가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 부처나 일반 기업체들의 직원 채용과 달리 직원을 채용하는 일이 몇 년에 한 번 부정기적으로 있을까 말까한 상담소와 같은 소박한 민간단체로서는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데 상당시간 노력이 필요하게 되어 평상시처럼 법률구조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 일들을 병행하기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회 전체의 올바름을 위한 일이기에 마땅히 해야 하지만 상담소로서는 어쩌면 지극히 형식적인 규정을 위한 규정에 너무 많은 인력과 시간을 소모하게 되어 안타까운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가정상담12월호-내지 2019.12.5 3:44 PM 페이지5 CTP-1

또 한 가지로 상담소의 지부 문제가 있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상담소의 자부심은 상담소가 우리나라 최초의 법률구조 기관이라는 역사적 사실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법률구조 공단 설립 30여 년 전에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이념 하에서 법률구조 사업을 시작했고 아울러 각 지역 사회에서도 이러한 법률구조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소박한 마음으로 시작한 것이 지부설치 사업이었습니다. 길게는 40여년에서 짧게는 10여년 안팎에 이르기까지 상담소의 전국 지부들이 지역사회에서 법률구조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2000년대 들어 본격화된 가정폭력 근절 및 예방을 위한 사업 또한 상담소의 지부들이 지역사회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여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1987년 상담소는 법률구조법의 제정을 이끌어냈고 이 법에 의거 최초의 민간 법률구조법인이 되었으나 민간단체로서 각 지역 사회의 지부들까지 끌어안을 여력을 갖출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현실을 인지한 주무부처의 양해 아래 상담소의 지부들은 그 이름을 가지고 오랜 기간 지역사회에서 소외되고 고통 받는 이들의 버팀목이자 모든 가정과 그 가족구성원들의 복리를 위한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1987년 법률구조법 제정 이후 위법성 논란으로 인해 이러한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했으나 경제적 문제 등 현실적인 요구가 너무 크다보니 법과 제도에 의거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부분을 계속 미루어 왔으나 올해 들어 그것이 더 이상은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하여 상담소는 본 지부 관계를 새로운 형태로 변화시키는 참으로 무겁고 힘겨운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는 시점이 되면 언제나 모든 지나온 시간은 '다사다난(多事多難)' 일 수밖에 없지만 상담소 63년 역사상 올해와 같이 힘든 해는 정말 처음이며 이러한 상황이 올해로 마지막이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상담소를 조금이라도 아는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이 '어떻게 이 적은 인원으로 그 많은 일들을 해내는가?' 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여기에 3,4배 더 많은 일이 가중되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직원 채용 문제 등과 관련하여 규정을 보완하는 일과 지부 문제였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우리 사회를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법과 제도에 입각하여 제대로 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큰일의 한 과정이라는 것을 알고 또 그 취지에 동의하기에 마땅하고 당연한 일로 받아들였으나 다만 한 가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 모든 일들이 그저 기관 개개인의 특성과는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일례로 입시의 농어촌 전형이나 취업에 있어 장애인 특별 전형 같은 것은 진정으로 공정과 평등을 위한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법률구조의 산 역사이며 가정문제 전문 법률구조 기관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서울을 제외한 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에서 수십 년 동안 법률구조 사업을 해온 지부들을 법률구조 활동에 대한 위법성 논란으로 인해 정리할 수밖에 없는 지금, 더욱이 국가의 소외계층, 가정문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관심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는 법률구조 사업이 이렇듯 타격을 받게 되는 것에 말할 수 없는 허탈함을 느낍니다. 적자생존이나 각자도생이라는 논리만으로 굴러가는 사회는 제대로 된 사회라 할 수 없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가운데 조직과 구성원에 맞는 적절한 배려가 함께 있어야 한 차원 높은 올바른 사회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상담소 역시 최초의 법률구조 기관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함께 노력해야겠다고 올해를 보내며 다짐합니다.

올 한해에도 상담소에 보내주신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가정마다 평화와 기쁨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가정상담12월호-내지 2019.12.5 3:44 PM 페이지6 CTP-1

현행 민법상 친생추정조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문

친생 추정 관련 토론문

배 인 구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헌법재판소가 2015. 4. 30. 2013마623 사건에서 민법 제844조의 혼인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에 대해 간이한 방법으로 친생추정을 번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결정한 이래 친생추정의 강하고 두꺼운 성벽은 점점 공략 가능한 모습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올해 봄 친생추정이 대법원 공개변론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친생추정에 대해 비단 가족법 뿐만 아니라 법철학, 젠더법학에 이르기까지 관심 있는 주제가 되었고 그 과정에서 민법의 친생추정 규범을 형해화하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친생추정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되고, 이런 의미 있는 자리에 참여하게 되어 개인적으로 무척 영광입니다. 김상용 교수님의 발표문을 통하여 친생추정의 체계를 제대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가르침을 주신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토론자는 김상용 교수님의 생각에 거의 동일합니다. 다만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설익은 생각이지만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 생부의 인지허가 및 친생부인

민법 제855조의2(인지의 허가 청구) ① 생부는 제844조 제3항의 경우에 가정법원에 인지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혈액채취에 의한 혈액형 검사, 유전인자의 검사 등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결과 또는 장기간의 별거 등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생부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재57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844조 제1항 및 제3항의 추정이 미치지 아니한다.

* 지난 10월 18일 열린 본 상담소 2019년 두 번째 심포지엄으로 친생추정조항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정방향을 논의하였다. 이 날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주제발표와 토론내용을 요약하여 게재하며, 지난 호 주제발표에 이어 이번 호에는 토론문을 요약하여 싣는다. 전문은 본소 홈페이지 http://www.lawhome.or.kr 에서 볼 수 있다. 심포지엄 관련 소식은 지난 11월호 〈가정상담〉 참조.

김상용 교수님은 제855조의2 제3항이 ① 인지허가 심판의 효력과 ② 인지에 갈음하는 생부의 출생신고의 효력, 그리고 ③ 친생추정이 미치지 아니한다는 개념의 혼돈 상태에서 탄생하여, 논리적으로 모순될 뿐만 아니라 민법체계와 전혀 조화되지 않는다고 비판하시면서, 친생부인의 허가와 인지의 허가라는 두 제도를 둘 필요 없이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십니다. 즉 혼인관계의 종료의 날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녀의 경우에 모, 모의 전 남편 또는 생부가 친생부인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면, 심판의 확정에 따라 친생부인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모의 경우에는 혼인외의 자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 생부의 경우에는 인지에 갈음하는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될 것이 라고 주장하십니다.

그런데 현행 민법 제854조의2는 어머니 또는 어머니의 전 남편은 제844조 제3항의 경우에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고,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844조 제1항 및 제3항의 추정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어머니 또는 어머니의 전 남편이 친생부인의 허가를 청구하여 허가를 받으면 그 자녀는 혼인 외의 자녀가 되어 생부는 인지할 수 있습니다. 즉 굳이 발표문 기재와 같이 민법 체계와 맞지 않는 제855조의2 규정을 두는 것보다는 차라리 삭제를 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개정안은 생부가 자를 법원의 개입 없이 모, 모의 남편, 생부의 사적인 합의에 의해 자의 신분을 결정할 수 있다는 비판을 염두에 둔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법원으로부터 친생부인의 허가 결정을 받아 친생추정으로부터 벗어난 이상, 또 우리 민법상 혼인 외의 자에 대하여 모의 동의 없이 생부가 인지할 수 있있는 점에 비추어 인지허가의 청구를 하도록 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만약 발표자의 생각과 같이 생부 역시 친생부인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면, 발표자께서 주장하는 위험에 그대로 노출된다고 생각됩니다. 즉 발표문 중 부자지간에 혈연관계가 배치되는 경우에 '친생주정이 미치지 않는 자' 의 법리를 적용하면 생기는 문제점과 같습니다. 모와 모의 남편이 가정을 유지하면서 자녀(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하여 출산하였으나, 그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는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례에서는 자녀의 복리나 가정의 평화가 크게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하여 낳은 자녀가 남편의 친생자가 아님을 알면서도 부부가 합의하여 가정을 유지하고 자녀를 양육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생부가 친생부인의 허가청구를 한다면 가정의 평화는 물론이고 자녀의 복리도 보호될 수 없습니다. 물론 모와 그 배우자가 빨리 출생신고를 하면 되겠지만 과연 생부도 친생부인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이와 같은 생각의 연장선상에서 생부에게 친생부인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토론자는 반대입니다. 발표자는 을과 정 사이에 출생한 혼인 중의 자 병이 생부 갑과 부자지간으로 가정생활을 하는 경우, 즉 갑이 인지의 의사를 가지고 자녀를 양육함으로써 그 사이에 실질적인 친자관계가 발생한 경우에는 생부 갑에게 친생부인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위 사례에서 을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할 것이고, 만약 을과 정 외에 친생부인의 원고 적격을 확대해야 한다면 위와 같은 위험을 고려하여 자녀 병에게 원고 적격을 인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2. 부자간에 혈연관계가 배치되는 경우 친생추정이 미치는지

친생부인의 소의 원고 적격과 소제기 기간은 계속 확대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로 정립된 이른바 외관설에 따라 친생추정의 입법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정이 완화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과학기술의 발달로 쉽게 친자관계를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친생추정제도가 과연 그 목적하는 가정의 평화와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는지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친생자로 추정되는지 여부는 출생 당시에 객관적으로 확정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친생추정 제도를 존치하는 한 혈연설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혈연설에 따르면 출생 당시에 어떤 추정을 받았는지 관계없이 언제든지 생물할적인 친자관계를 부인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친생추정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음에도 언제든지 친생자관

계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해서 친자관계를 배제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외관설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토론자는 자녀가 친생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더라도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는 대신 처와 이혼을 선택하고 양육도 하지 않는다면 그 경우에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으로 친자관계를 배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백혜련 의원 대표 발의 민법 개정안의 조문대비표는 본소 홈페이지 참조 – 편집자 주

토론문

친생 추정 관련 토론문

송 효 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친생추정 제도는 2017년 민법 개정 이후에도 여전히 뜨거운 논쟁이 진행 중입니다. 김상용 교수님께서 발제문에서 지적하고 계시다 시피, 2017년 개정에도 불구하고 개정 규정의 한계와 문제도 여전히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한 친생추정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입법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무리한 법해석론적 접근과 단편적이고 매우 소극적인 개정으로 버티고 있는 한계가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는 것이 배경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발제문에서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들에 대해서 동의하는 입장에 있으며, 본 토론에서는 이에 덧붙여 젠더관점에서의 친생추정제도의 문제와, 2017년 개정 민법상 친생부인허가청구 및 인지허가청구 제도에 있어 출생신고 지연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는 것으로 토론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1. 젠더관점에서 친생추정제도의 문제[1]

법에서 법률상의 부(父)를 정하는 문제는 유전자 검사 등 의학 · 과학 기술이 발전하기 이전의 시대에는 부성(父性)의 불확실성이라는 근원적인 문제 때문에 법적 결단이 필요한 문제였습니다.

가부장적인 가족제도 하에서 혼인제도 안에서 출생한 자녀들에 대해서는 유전자 검사가 불가능했던 시대에 확인 불가한 부계 혈통을 법에 의한 강한 부성(父性)추정[2]을 통하여 부(父)를 정하였고, 여성이 행하는 혼인제도 밖에서의 관계와 출산은 제도로서 부성(父性)을 담보하는 가부장제 질서를 흐리는 것으로서 터부시되고 도덕적으로 비난받았습니다. 지금의 법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친생추정제도가 이미 존재했던 가부장제가 확립되었던 시대부터 정조의무는 남성보다는 여성을 주된 대상으로 한 도덕적 · 법적 규제로서 작용하였습니다.

부성(父性)의 불확실성을 제도로서 커버할 수 있었던 강한 친생추정제도가 큰 문제없이 유지되기 위한 전제는 가부장제 가족제도의 질서를 벗어난 관계와 출산의 가능성이 최소화됨으로써 법과 실제의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가능한 한 최소화되는 것일 것입니다. 적어도 현대 이전의 사회에서 가부장적 가족제도의 질서 밖에서의 관계와 출생에 관련된 여성과 아동에 대한 공동체 안에서의 사회적 · 경제적 생존이 불가할 정도의 터부시와 차별을 통하여 충분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3] 그리고 이러한 편견과 차별로 인한 어려움은 오늘날 우리사회에서 가부장적 제도를 벗어

1) 이하의 내용은 송효진 · 박복순 · 최진희 · 신옥주(2018), 「비혼 가족 자녀에 대한 차별 법제 개선을 위한 연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토론자 집필 부분의 일부를 토대로 수정 보완한 내용임을 밝힙니다.

2) 규범적 부성(父性)추정(오병철, 2018)

3) 혼인제도 밖에서 남성

나거나 진입하지 않은 채 가족을 구성하거나 관계 맺기를 시도하는 사람들을 향해 여전히 존재합니다.

부성(父性) 증명의 어려움이 친생추정 제도를 고안할 수밖에 없었던 전제라고 한다면, 가부장적 가족질서, 여성에 대한 강력한 순결이데올로기는 강한 친생추정제도가 문제없이 운영되는 것에 매우 정합한 사회 규범이고 질서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회가 변화하면서 이러한 전제와 사회질서와 가치에 변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학 · 과학 기술의 발달로 부성(父性)의 과학적 증명이 가능해진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가부장적 가족질서는 균열과 변화가 진행 중이며, 형법상 간통죄는 폐지되었습니다.

친생추정제도는 이러한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여 근본적인 재고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친생추정제도가 과연 자의 복리를 위한 제도인가에 대하여서도 다르게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친생추정과 인지를 위해 출생한 자녀를 혼인중의 출생자와 혼인외의 출생자로 구분하는 친자법의 관점은 자녀의 입장에서는 매우 차별적입니다. 친자법제는 부(父)를 정함에 있어 아동의 부모를 알 권리라는 관점에서가 아닌, 부(父)를 중심으로 법률혼제도에 기반을 둔 정상가족에 속하는 지 그렇지 않은 지의 관점에서 자녀에게 신분상의 지위를 부여하고, 자녀의 복리를 판단합니다. 강한 친생추정은 제도 밖에서는 사회적 · 경제적으로 생존이 불가하였던 강한 가부장제 질서가 작용하는 사회에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최선이었을지 모르나, 가족 가치가 변화하고 과학이 발달하여 친생증명이 가능해진 오늘 날에는 반드시 그렇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2017년 개정 민법 규정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 민법은 친생추정제도를 근본적으로 건드리지 않고 최소한의 개정에 머무른 한계입니다. 2017년도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혼인한 남성이 혼인관계가 아닌 관계에서 자녀를 갖게 된 경우의 출생신고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장벽과 혼인한 여성이 마찬가지의 경우 출생신고에 있어서 겪는 장벽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호주제도가 폐지되고 가제도가 폐지되었지만, 오늘날 여전히 출생한 아동은 법률혼 제도 안에서 여전히 친생 추정와 자녀의 성(姓)을 부여함에 있어 권력적, 제도적 우위에 있는 제도혼의 부계에 복속하는 지위에 놓이게 됩니다.

친생추정제도는 사회의 변화에 맞게 아동을 중심으로 관점과 패러다임을 전환하여야 합니다.

2. 출생신고의 지연과 아동 인권침해의 문제

2017년 신설된 친생부인허가청구 및 인지허가청구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에 발제에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출생신고 지연의 문제가 수반됩니다. 출생신고 지연의 문제는 친생부인허가청구와 인지허가청구의 경우 뿐 아니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 제2항(예컨대 미혼부의 출생신고) 및 가족관계등록법 제44조의2에 의한 출생신고의 경우에도 발생합니다. 즉,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 필연적으로 출생신고는 1개월을 지나서 지연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확인절차에서의 과학적 증명의 도입과 가정법원의 확인제도 그 자체는 시대의 변화를 절차에 반영하고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이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아동의 출생등록의 지연 및 이에 따른 아동인권의 사각지대를 발생시키는 문제가 있으며, 이에 대한 입법적 · 정책적 보완책은 아직 강구되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현 제도 하에서 이러한 경우의 출생 아동은[4] 다만, 출생신고 전 이라도 병원에 '신생아로서 건강보험증에 등재확인을 받지 못한 경우' 로 처리하면, 건강보험적용이 가능합니다.[5] 또한 보건소에서 관리번호를 받으면 필수예

4) 이하 송효진 · 김영란(2018), 「혼인외 출산 · 양육에 대한 차별적 제도 발굴 연구」, 여성가족부의 토론자 집필 부분의 일부를 토대로 수정 보완한 내용임을 밝힙니다.

5)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한부모가족 공지사항(http://www.mogef.go.kr/cs/opf/cs_opf_s001.do?mid=gnr109) (최종접속일 2018.12.5.)

방접종이 가능합니다. 보호자의 우선순위 모(母)가 원칙이나, 모(母) 확인 어려울 경우 기타 보호자가 신분증을 지참하여 관리번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 후에서 보건소에 기록통합관리를 요청해야합니다. 보육료, 양육수당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역시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는 부여받으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로의 연결 접근성이 그다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근본적인 개선방안으로는 적어도 아동이 출생 즉시 등록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행 법제 하에서 가정법원의 확인을 거쳐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 절차상 필연적으로 법정 출생신고 기한인 1개월을 초과하게 되므로, 일단 부모 기재를 하지 않은 채 아동의 출생신고를 접수하여 등록하고, 이후 법원의 확인에 의하여 친생확인이 이루어지면 그때 보완(추완)신청 내지는 직권정정 신청 등으로 추후에 부를 기재하여 보완하게 한다든지 하는 절차상의 방안 마련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가정법원은 출생미신고 아동의 출생신고 관련 비송사건이 접수되면 즉시 직권으로 출생신고 완료시까지 아동의 보호자와 보호자의 주소지 담당 사회복지사 등을 임시공동후견인으로 지정하고, 아동의 복리를 위한 의료 및 복지 지원 등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아동이 보호체계 하에 있을 수 있도록 아동의 복리를 위한 법원의 후견적 기능을 적극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출생신고에 가정법원의 확인 등 시일이 소요되는 케이스의 경우 특히, 가능한 한 행정력을 동원하여 출생신고가 완료될 때까지 복지 체계 하에서 출생아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노력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출생 아동의 부(父)가 확정되는 문제는 물론 중요하지만, 아동의 출생등록 그 자체 보다 선순위를 차지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아동의 출생은 '누구의 집-가(家)'의 구성원으로 입적이 되는 가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아동은 출생 즉시 등록되어야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토론문

제854조의2에 따른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및 민법 제855조의2에 따른 인지의 허가 청구에 관한 법원의 실무례

신 일 수
수원가정법원 판사

1. 의의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 포태한 것으로 추정하는 구 민법 제844조 제2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 결정(2015. 4. 30. 헌법재판소 2013헌마623 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 취지에 따라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되나, 자녀가 이미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모 또는 모의 전 남편은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할 수 있고, 생부는 가정법원에 인지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등이 민법에 신설되었습니다(법률 제14965호, 2017. 10. 31. 공포, 2018. 2. 1. 시행). 이는 라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자녀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이 관할이고, 개정 민법 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도 적용이 되나, 이 법 시행 전에 판결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2. 관련규정

민법

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②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854조의2(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① 어머니 또는 어머니의 전 남편은 제844조 제3항의 경우에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혈액채취에 의한 혈액형 검사, 유전인자의 검사 등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결과 또는 장기간의 별거 등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844조 제1항 및 제3항의 추정이 미치지 아니한다.

제855조의2(인지의 허가 청구) ① 생부는 제844조 제3항의 경우에 가정법원에 인지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혈액채취에 의한 혈액형 검사, 유전인자의 검사 등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결과 또는 장기간의 별거 등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생부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844조 제1항 및 제3항의 추정이 미치지 아니한다.

가사소송법

제2조(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리와 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2. 가사비송사건

가. 라류 사건

7)의2 민법 제854조의2에 따른 친생부인의 허가 7)의3 민법 제855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지의 허가

제44조(관할 등) ① 라류 가사비송사건은 다음 각 호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3의2. 친생부인의 허가 및 인지의 허가에 관한 사건은 자녀의 주소지의 가정법원

제45조의8(친생부인의 허가 및 인지의 허가 관련 심판에서의 진술 청취) ①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어머니의 전 배우자와 그 성년후견인(성년후견인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줄 수 있다.

1. 「민법」 제854조의2에 따른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
2. 「민법」 제855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지의 허가 심판

② 제1항의 진술을 들을 때에는 심문하는 방법 외에도 가사조사관을 통한 조사나 서면조회 등의 방법으로 진술을 들을 수 있다.

가사소송규칙

제61조의2(즉시항고) 친생부인을 허가하는 심판과 인지를 허가하는 심판에 대하여는 민법 제854조의2 제1항에 규정한 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3. 청구권자 및 요건사실

○ 청구권자는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의 경우, 어머니 또는 어머니의 전 남편이고, 인지의 허가 청구는 생부입니다.

○ 요건사실은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하지 않을 것(친생부인의 허가 청구와 인지 허가 청구 모두 친생추정을 받은 부의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과 어머니와 어머니의 전 남편이 혼인관계를 종료한 후 300일 내에 출생하여야 합니다.

4. 기본서류

친생부인 허가의 경우

친모와 친생추정을 받는 부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사건본인의 출생증명서, 어머니의 전 남편의 친생자가 아니라는 소명자료가 필요한데, 해당 소명자료로 청구인이 사설업체에서 발급받은 혈액및유전자감정서를 첨부한 후 그 검사결과에 따라 허가결정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현재 서울 및 각 가정법원에서는 친생부인의 소 등과는 달리 상대방이 없는 비송

사건인 점, 여러 사설업체에서 발급받은 혈액및유전자감정서에 대한 신뢰정도를 계량화하거나 전부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모든 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혈액및유전자감정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다만, 사설업체에서 발급받은 "혈액및유전자감정서 + 어머니의 전 남편에 대한 의견조회절차"를 법원의 혈액및유전자감정절차에 갈음하여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고가인 법원 감정비용부담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적극적인 절차구조를 통해 그 비용의 전액을 보전하여 주는 실무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지 허가의 경우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친모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사건본인의 출생증명서, 사건본인이 청구인의 친자라는 소명자료가 필요하고, 해당 소명자료에 대한 설명은 위 친생부인 허가의 경우와 같습니다.

5. 심리방향

혈액채취에 의한 혈액형 검사, 유전인자의 검사 등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결과 또는 장기간의 별거 등 그 밖에 사정을 고려하여야 하고(민법 제854조의2 제2항, 민법 제855조의2 제2항),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과 인지 허가 심판의 경우 어머니의 전 남편과 그 성년후견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5조의8 제1항). 이 경우 심문하는 방법 외에도 가사조사관을 통한 조사나 의견조회서의 송달 등의 방법으로 진술을 들을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5조의8 제2항). 현재 서울 및 각 가정법원에서는 어머니의 전 남편에게 의견청취서 송달하고, 인지 허가의 경우는 사건본인의 어머니의 동의서가 없는 경우, 어머니에게도 의견청취서를 송달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출생증명서의 임신기간을 계산한 결과, 조산 등으로 사건본인의 임신이 혼인관계가 종료된 이후인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나 출입국증명서 등에 의해 전 남편의 장기 해외 체류 등이 나타난 경우 등의 경우는 의견청취를 생략하기도 합니다.

6. 심판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주문은, 청구인의 사건본인에 대한 친생부인을 허가한다(어머니의 전 남편이 청구한 경우), 사건본인과 청구 외 ○○○(모의 전 남편의 주민번호, 주소)의 친생부인을 허가한다(어머니가 청구한 경우).

인지 허가 청구 주문은, 사건본인(어머니의 인적사항 기재)을 청구인의 친생자로 인지함을 허가한다.

7. 불복

어머니와 어머니의 전 남편은 친생부인을 허가하는 심판과 인지를 허가하는 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61조의2). 청구인은 친생부인허가 기각 심판과 인지허가 기각 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27조). 즉시항고 기간은 14일입니다(가사소송법 제43조 제5항).

8. 확정 후 절차

○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이 확정되면, 친생추정 배제 효력이 발생하므로, 어머니가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출생신고 하여야 하고, 자녀의 생부도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친생자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지)에 따른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인지의 허가 심판이 확정되면, 허가 받은 생부가 인지의 허가 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친생자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지)에 따른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어머니의 전 남편의 혼인 중의 자로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게 됩니다.

9. 관련 사항

○ 구 민법 제844조 제2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는 '혼인관계종료 후 300일 내에 출생한 자는 유전자검사 등을 통하여 전 남편의 친생자가 아님이 명백하고 전 남편이 친생추정을 원하지도 않으며 생부가 그 자를 인지하려는 경우에도 예외 없이 전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되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는 친생추정을 번복할 수 없도록 하고, 아울러 위 규정이 자의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해야만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결합되면서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전 남편의 친생자로 등록될 수밖에 없는 것은 헌법과 합치되지 않는다' 고 요약됩니다.

○ 이 중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는 친생추정을 번복할 수 없다는 부분은 헌법불합치 이전에도 이미 '구 민법 제844조는 부부가 동거하여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자를 포태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부부의 한쪽이 장기간에 걸쳐 해외에 나가 있거나 사실상의 이혼으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경우 등 동서(同棲)의 결여로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추정이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3. 7. 12. 선고 82므59 전원합의체 판결)' 는 법리에 따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길을 열어줌으로써 어느 정도 불합리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의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해야만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규정은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송 보다 절차가 간단하고 신속한 비송사건절차를 통하여 친생추정을 번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하여 친생부인의 허가와 인지의 허가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 아래는 서울가정법원, 인천가정법원, 수원가정법원의 5년간 친생부인의 소에 관한 접수처리 현황과 민법 개정 이후 2년간 친생부인의 허가와 인지의 허가에 관한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서울가정법원

가. 친생부인의 소 접수 처리 현황

기 간	접수	처 리		처리계	평균처리기간
		인용	기각		
2015.01.01.~2015.12.31.	119	98	1	121	
2016.01.01.~2016.12.31.	105	96	3	118	
2017.01.01.~2017.12.31.	103	83	2	103	
2018.01.01.~2018.12.31.	58	41	0	50	162일
2019.01.01.~2019.08.31.	36	37	0	46	206일

– 처리계 건수는 종국 결과 중 인용, 기각, 기타를 모두 합한 것입니다.(이하 같음)

나. 친생부인의 허가 접수 처리 현황

기 간	접수	처 리		처리계	평균처리기간
		인용	기각		
2018.01.01.~2018.12.31.	66	36	1	58	38일
2019.01.01.~2019.08.31.	23	17	1	21	70일

다. 인지의 허가 접수 처리 현황

기 간	접수	처 리		처리계	평균처리기간
		인용	기각		
2018.01.01.~2018.12.31.	49	22	1	45	53일
2019.01.01.~2019.08.31.	22	14	1	16	73일

인천가정법원(개원 전 구. 인천지방법원 가사부 포함)

가. 친생부인의 소 접수 처리 현황

기 간	접수	처 리		처리계	평균처리기간
		인용	기각		
2015.01.01.~2015.12.31.	50			54	
2016.01.01.~2016.12.31.	66			59	
2017.01.01.~2017.12.31.	45			58	
2018.01.01.~2018.12.31.	31			30	121일
2019.01.01.~2019.08.31.	20			20	117일

나. 친생부인의 허가 접수 처리 현황

기 간	접수	처 리		처리계	평균처리기간
		인용	기각		
2018.01.01.~2018.12.31.	52			51	22일
2019.01.01.~2019.08.31.	26			25	21일

다. 인지의 허가 접수 처리 현황

기 간	접수	처 리		처리계	평균 처리 기간
		인용	기각		
2018.01.01.~2018.12.31.	23			23	14일
2019.01.01.~2019.08.31.	7			7	11일

수원가정법원(개원 전 구. 수원지방법원 가사부 포함)

가. 친생부인의 소 접수 처리 현황

기 간	접수	처 리		처리계	평균 처리 기간
		인용	기각		
2015.01.01.~2015.12.31.	44			49	
2016.01.01.~2016.12.31.	53			52	
2017.01.01.~2017.12.31.	43			46	
2018.01.01.~2018.12.31.	25			29	117일
2019.01.01.~2019.09.30.	15			16	137일

나. 친생부인의 허가 접수 처리 현황

기 간	접수	처 리		처리계	평균 처리 기간
		인용	기각		
2018.01.01.~2018.12.31.	36	31	0	35	30일
2019.01.01.~2019.09.30.	15	14	0	15	63일

다. 인지의 허가 접수 처리 현황

기 간	접수	처 리		처리계	평균 처리 기간
		인용	기각		
2018.01.01.~2018.12.31.	32	24	3	29	27일
2019.01.01.~2019.09.30.	15	9	2	14	59일

○ 위 현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민법이 개정된 이후 친생부인의 소 접수는 약 절반가량 줄어든 반면 친생부인의 허가와 인지의 허가는 아직 시행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상당수가 접수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울러 평균 처리기간 또한 친생부인의 소에 비하여 친생부인의 허가와 인지의 허가의 처리기간이 훨씬 더 단축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특히 인천가정법원의 경우, 인지의 허가 사건은 매우 신속하게 진행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비송사건 심리 또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고 일부 사건의 경우 즉시항고 기간을 부여하지 않을 수 없는 사정 등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친생부인의 허가 제도와 인지의 허가 제도 또한 사실상으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출생신고 기간 1개월의 위반 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개정 민법만으로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현행법 위반을 조장하는 것임과 동시에 결과적으로 유엔 아동권리협약으로 규정된 아동의 기본권 즉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한다는 권리를 침해한다는 발표자의 문제의식에 동의합니다.

○ 개정 민법이 존재하는 이상 법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근본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법원으로서는 비송사건을 보다 더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법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신고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하여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5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규정에 있는 정당한 사유에 관하여 폭넓게 해석하여, 친생부인의 허가 제도와 인지의 허가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과태료를 면제해주는 방법 정도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표자님께서는 개정 민법이 존재하는 현재 상황에서 법원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제안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론문

"친생추정에 관한 쟁점"에 대한 토론문
-프랑스민법상 친자관계를 중심으로-

안 문 희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역사적으로 부성추정에 관한 이론은 친자관계 입증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로마의 법학자인 Paul에 의해서 신설되었으며, 현대적인 혈액이나 유전자 검사가 도입되기 전까지 부성추정의 문제는 불확실한 문제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프랑스는 특히 1804년 나폴레옹 민법 제정에 참여한 입법자들은 부성추정과 관련하여 혼인으로 성립된 가족 보호

라는 목적을 위해 모의 배우자(mari; 夫)를 출생한 자녀의 부(pére; 父)로 인정하는 동시에 혈연에 근거한 친자관계는 은폐 또는 묵살하였습니다. 이러한 부성추정의 원칙은 약 170년이 지나 Carbonnier가 주도한 '친자관계에 관한 1972년 1월 3일 법(Loi n° 72-3 du 3 janvier 1972 sur la filiation)'을 통해 프랑스에서는 현대적 의미에서의 친자관계가 정립되었는데, 해당 개정을 통해 첫째, 혼인중의 출생자와 혼인외의 출생자 사이의 차별을 없애고, 둘째, 혈연에 근거한 친자관계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친자관계 개정에 관한 2005년 7월 4일 법규명령(Ordonnance n° 2005-759 du 4 juillet 2005 portant réforme de la filiation)'을 통한 개정으로 기존의 복잡했던 친자관계에 관한 이의소송을 간이화하고, 혼인 여부에 따른 모성추정에 대한 차별을 삭제하였습니다.

프랑스민법은 자녀의 출생증명서, 인지증명서 또는 신분점유를 입증하는 공정증서를 통해 친자관계가 입증된다고 보고 있어(프랑스민법 제310-3조 제1항), 이하에서는 이들 3가지 부분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자녀와 모 사이의 친자관계는 해당 자녀의 출생증명서에 모를 지정(기재)함으로써 성립되며(프랑스민법 제311-25조), 자녀와 모와의 친자관계에 대한 증명은 포태와 출산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특히 2005년 7월 4일 법규명령을 통해 혼인하지 않은 모에게 요구되었던 인지신고가 아니라 출생증명서에 모의 기재를 통한 친자관계의 성립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출생증명서에 모의 기재를 통한 친자관계 성립이라는 원칙은 프랑스민법 제326조 및 가족 및 사회 활동법(Code de l' action sociale et des familles: CASF) 제L.222-6조가 규정하는 익명출산규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모성추정 및 친자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을 권리를 모에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즉 모가 자신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익명으로 하면서 자녀를 출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익명출산으로 출생한 자녀의 출생증명서에는 모의 성명이 기재되지 않습니다.

부성추정과 관련하여 자녀는 출생일 300일 전부터 180일 전까지의 기간 동안에 포태되었다고 추정되며(프랑스민법 제311조 제1항), 특히 자녀의 포태 시점은 해당 기간 내에서 자녀의 복리 보호를 위한 시점으로 추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프랑스민법 제311조 제2항). 그러나 자녀의 포태 시점과는 별도로 프랑스민법 제312조는 "혼인기간 동안 포태되거나 출생한 자녀의 부(父)는 부(夫)이다."라고 규정하여 부성추정은 혼인기간 동안 포태한 자녀뿐만 아니라 출생한 자녀까지 포함함으로써 혼인식을 거행한 날을 기준으로 179일 이전에 출생한 자녀도 부의 자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기간을 통한 부성추정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법정 별거(séparation de corps) 또는 사실상 별거(séparation de fait) 기간을 비롯해, 이혼 청구에서 조정 불성립 명령 시점(협의서의 승인 시점)을 기준으로 300일 이후 또는 이혼 청구 기각(화해 성립)을 기준으로 180일 이전에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는 부성추정을 배제하여 친자관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자연적인 포태 또는 출산에 어려움을 겪는 성별이 다른 부부, PACS 당사자 및 모든 커플에게 인공수정이 허용되며, 인공수정을 원하는 부부(또는 커플)는 인공수정으로 인한 친자관계 성립 및 그 효과를 공증인을 통해 고지 받게 되고, 비밀유지 조건에 동의하는 경우에 인공수정이 가능합니다(프랑스민법 제311-20조). 인공수정에 대해서 부부(또는 커플)가 동의한 경우에는, 인공수정을 통해 출생한 자녀와의 친자관계에 대한 이의 제기를 위한 어떠한 소송도 부부(또는 커플)에게 허용되지 않으며(프랑스민법 제311-20조 제2항), AID(제3자인 정자기증자에 의한 인공수정) 방식으로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 해당 제3자와 출생한 자녀 사이에는 어떠한 친자관계도 성립하지 않으며, 해당 제3자에 대한 어떠한 소도 제기될 수 없습니다(프랑스민법 제311-19조).

부 또는 모가 자녀를 인지하기 위해서는 프랑스민법 제311-25조(출생증명서를 통한 모의 지정)를 비롯하여 동법 제312조 내지 제315조(부성추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가능하며, 이러한 인지신고는 자녀의 출생 전 또는 후에 신분등록공무원에게 할 수 있으며(프랑스민법 제316조 제1항), 인지로 인한 친자관계는 자녀의 출생증명서에 기재됩니다(프랑스민법 제316조 제3항). 이와 같은 인지신고와는 달리 자녀는 부 또는 모에 대한 재판상 인지를 통해서 친자관계를 성립시킬 수 있으며(프랑스민법 제328조 제1항), 해당 소의 제기는 자녀에게만 허용됩니다(프랑스민법 제327조 및 제325조). 재판상 인지 청구는 해당 자녀의 연령이 28세까지 제기될 수 있습니다(프랑스민법 제321조 및 제329조).

프랑스민법은 신분점유(possession d'état)라는 지위를 인정하고 있는데, 신분점유는 실제 생활에서 자녀와 부 또는 모 사이에 친자관계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혈연에 의한 친자관계가 아닐 수도 있는 상태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신분점유에 대한 입증은 공증인에 의해 발급된 공정증서를 통해 가능하며, 이와 같은 공정증서를 통해 인정되는 신분점유로 인한 친자관계의 성립은 해당 자녀의 출생증명서에 기재됩니다(프랑스민법 제317조 제4항). 이러한 신분점유는 자녀와 부 또는 모와의 사이에 실제 친자관계와 동일한 외관 및 자녀와 가족들 사이의 실체적 관계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사실상의 요건들로 인정되는데(프랑스민법 제311-1조 제1항), 구체적으로 첫째, 부 또는 모와 자녀 사이에 실제적인 가족관계가 존재하며, 둘째, 부 또는 모는 해당 자녀의 교육, 양육 또는 거주와 관련한 물질적인 부담을 지며, 셋째, 해당 가족이 속한 사회, 가족 및 공공 기관에서 이들을 부 또는 모와 자녀의 관계로 인정하고 있으며, 넷째, 해당 자녀가 부 또는 모의 성(姓)을 따르고 있는 경우에 인정됩니다(프랑스민법 제311-1조 제2항). 이러한 신분점유를 통한 친자관계 성립은 공정증서를 통해 가능하며(프랑스민법 제317조 제1항), 이때 신분점유에 대한 공정증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증인 3명의 진술 및 앞서의 4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프랑스민법 제317조 제2항). 신분점유를 통해 성립된 친자관계에 대한 이의 제기는 부, 모 또는 부모임을 주장하는 자 또는 검사로 제한되며, 신분점유의 중단 시점 또는 이의가 제기된 친자관계의 부 또는 모의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5년 내에 제기되지 못하면 친자관계이의소송은 시효로 소멸하게 됩니다(프랑스민법 제333조). 즉 자녀의 출생 또는 인지 후에 신분점유 상태가 5년 동안 유지된 경우에는, 누구에게도(검사 제외) 이의 소송이 허용되지 않습니다(프랑스민법 제333조 제2항).

프랑스 친자법은 우리 민법과 유사하게 혼인기간 동안 출생한 자녀에 대한 친자관계의 성립을 규정하면서도, 우리 민법에는 없는 신분점유와 같은 사실상의 친자관계를 비롯해 출생증명서의 부 또는 모의 기재라는 방식을 통해 친자관계의 성립(또는 불성립)을 인정함으로써 혈연에 부합하는 친자관계와 가정 · 미성년 자녀의 복리 보호를 조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토론문

현행 민법상 친생추정 조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차 선 자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우리 민법은 2015년 헌법재판소는 민법 제844조 제2항 중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에 관한 부분이 모가 가정생활과 신분관계에서 누려야 할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고, 심판대상조항에 대해서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자, 민법 제844조를 개정하고 제854조의2(친생부인의 허가 청구)와 제855조의2(인지의 허가 청구)가 신설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로써 혼인관계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친생부인허가 청구 또는 인지허가 청구에 따른 심판이 이루어질 때까지 출생신고가 유예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은 김상용 교수님의 발제문에 나타나듯 적어도 총 6개월 정도의 기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김 교수님의 지적처럼 출생과 함께 등록되어야 할 권리를 중요한 인권의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는 [아동권리협약]을 위반할 가능성이 상당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개선 입법은 모의 혼인생활에서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할 수 있을지 몰라도 아동인권의 침해를 야기한 점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전남편, 현재의 동거 중인 남성, 이혼한 모, 및 아동 이들 사이에서 아동의 인권을 덜 보장하는 방식으로 문제 해결을 기획한 개정법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 의식에 대해서 김 교수님의 견해에 동의하며 친자법의 궁국적인 목적이 일면은 혈연진정성에 기반한 친자관계의 신속한 안정으로 자의 복리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위의 관련자들 중 가장 고정변수로 전제되어야 할 것은 '출생후 즉시 등록될 아동의 인권' 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기본적인 문제의식에 공감하면서 몇 가지 의문점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1. 먼저, 교수님께서는 우리 민법의 친생자는 혼인중의 출생자와 혼인외의 출생자로 나누어지며, 혼인중의 출생자는 다시 ① 친생자의 추정을 받는 혼인중의 출생자, ② 친생자의 추정을 받지 않는 혼인중의 출생자, ③ 친생자의 추정이 미치지 않는 자로 나누어지며, 이러한 분류는 자녀가 혼인중의 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을 때에만 그 자녀가 모의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되는가, 추정이 미치는가의 여부를 논할 수 있으므로 혼인외의 자의 경우에는 누구(설령 생부라고 해도)의 친생자로 추정된다, 추정되지 않는다, 혹은 추정이 미치지 않는다는 식의 친생추정에 관한 논의는 성립할 여지가 없음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대 현행 민법은 '혼인중의 자' 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할 때 다소 명확하지 않은 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① 혼인 성립 후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가 출생한 경우 : 이 경우 혼인중의 출생자라는 개념은 포태 시기와 출산 시기 모두 모가 법률상 혼인 상태에 있으므로 출생자는 혼인중의 친생자로 추정된다는 의미입니다. 만일 혼인 성립 수 200일 이후 자녀가 출생한 경우 출생한 자녀가 모의 법률상 배우자의 자녀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혼인중의 자녀의 지위와 친생추정은 미치게 되며 이후 친생부인소의 효력으로 소급적으로 친생자 추정과 혼인중의 자녀의 지위가 소멸될 것 입니다.

② 혼인 성립한 날로부터 200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 이 자녀는 친생추정을 받지 않는 혼인중의 출생자로 분류됩니다. 출생신고도 모의 남편과 모 사이에서 출생한 혼인중의 자로 출생신고를 합니다. 다만 친생추정을 받지 않으므로 친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 부자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모의 포태 시점을 기준으로 모의 법률상 배우자의 친생자 추정을 할 수 없지만 출생자가 모의 법률상 혼인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출생하였으므로 이를 근거로 혼인중의 지위를 부여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제844조는 "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②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혼인성립후 200일 이전에 출생한 자녀는 모의 임신이 '혼인 중에'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으며 임신시점을 기준으로 모의 법률혼 여부를 판단한다면 이 경우 혼인중의 출생자로 분류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법은 혼인성립후 200일 이전에 출생한 자를 친생추정을 받지 않는 혼인중의 자로 분류합니다. 그것은 결국 출산시 모의 법률혼이 존속하고 있었다는 것을 근거로 혼인중의 자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민법에서 정의한 혼인중의 출생자란 ① 모의 임신이 법률혼 중에 이루어진 경우 또는 ② 모의 출산이 법률혼 중에 이루어진 경우, 양자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임신과 출산시 모두 모의 법률혼이 존속할 경우에만 혼인중의 출생자로 분류한다면 모의 혼인성립 후 200일 이전에 출생한 자녀는 임신시 모가 미혼이었으므로 두가지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혼외자로 분류되어야 하지만, 실제 우리 민법은 이 경우 친생추정을 받지 않는 혼인중의 자로 분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민법이 이처럼 혼인중의 자녀의 개념을 임신시 또는 출산시 모의 법률혼 존속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혼인성립 후 2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에게도 혼인중의 자녀의 지위를 인정한다면 출산시 모의 법률혼이 존속하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혼외자와 혼인중의 자의 개념 구별을 하는 것이 지나친 해석일지 의문입니다. 언급한 바와 같이 혼인성립후 200일 이후 출생한 자 또는 200일 이전 출생한 자 모두 혼인중의 자녀로 분류한다면 혼인중 출생자의 개념은 출산시점의 모의 법적지위가 법률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혼인중 출생자의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혼외자의 개념을 '출산시 모의 법률혼 존속 여부' 를 기준으로 할 경우 전혼관계 종료 후 모가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300일 이내에 자녀를 출산한 경우 이 출생자는 전혼 관계에서 친생추정을 받지만 출생시 모의 법률혼은 귀속되어 있지 않으므로 혼외자로 분류되게 될 것입니다. 만일 모가 재혼하여 전혼 종료후 300일 이내 재혼성립후 200일 이내에 출산한다면 출생자는 출산시 모의 법률혼 귀속에 따라 혼인중의 자녀이나 전혼관계의 친생추정을 받고 재혼에서는 친생추정이 미치지 아니하는 혼인중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2015년 관련 개정을 촉발하게 된 사안의 경우 母가 2012년 2월 28일 이혼신고를 마치고 동거를 시작하여 2012년 10월 22일 子를 출산하였는데 이 경우 子의 지위는 현행 민

법의 혼인중의 자의 개념에 따르면 혼인중의 친생추정을 받는 자로 분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대 혼인중의 출생자의 개념을 ① 출산시 모의 법률상 혼인의 존속 여부에 따라 부여되는 개념으로 사용되거나 ② 모의 포태시 모의 법률상 혼인존속여부에 의하여 부여되는 개념으로 사용하면 친생부인의 허가 (제854조의 2)에 관한 규정이 해석이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이 도입한 제854조의 2 친생부인 허가의 경우 그 효력은 친생부인의 소와 동일하므로 제833조 제3항의 추정이 미치는 경우 친생부인의 허가를 받게되면 결과적으로 친생추정을 받는 자녀와 모의 남편 사이에 법률상의 친자관계가 출생시로 소급하여 소멸되며 子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교수님께서는 제854조의2 제3항이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이 확정되는 경우 그 효력으로서 그 자녀는 친생자의 추정이 미치지 않는 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르면 그 자녀는 혼인외의 자가 아니라 친생자의 추정이 미치지 않는 자, 즉 혼인중의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자가 된다는 결론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론에 이른다면 친생자의 추정이 미치지 않는 자의 경우에는 일단 모와 남편의 혼인중의 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게 되고, 출생신고서와 가족관계등록부의 부(父)란에는 모의 남편을 기록해야 하는데 이러한 결과는 개정법의 취지와 완전히 배치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합니다. 이를 근거로 제854조의 2 제3항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친생부인의 효력이 발생하여 그 자녀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된다." 로 문언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보고 계십니다. 이러한 문언 개정에 대해서는 제854조의 2의 명확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동의합니다.

다만 혼인 종료 후 출산 시점에 모에게 법률혼이 귀속되어 있지 않을 경우 출생자를 혼외자로 분류하고 제844조 제3항의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문구의 의미를 '친생추정이 적용된다' 는 의미로 보면 현행 제854조의 2 제3항은 친생추정만을 배제하면 결과적으로 출생자는 친생추정이 미지지 않는 혼외자가 된다고 해석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특히 현행 제847조 제1항은 "친생부인(親生否認)의 소(訴)는 부(夫) 또는 처(妻)가 다른 일방 또는 자(子)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는 문구 이외에 그 효력을 민법 규정에서 명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친생부인의 소가 형성의 소이므로 그 효력으로 혼인중의 친생자 추정을 받았던 출생자의 지위가 소급적으로 전부 소멸하여 혼외자가되고 친생추정을 받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행 민법 제854조의 2의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가 친생부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본다면 특별히 동조 제3항이 "친생추정이 미치지 아니한다"는 문언을 표시하고 있다는 것으로부터 출생자가 혼외자의 신분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할 필요가 있을까요?

2. 교수님께서는 원칙적으로 친생부인 허가와 인지허가를 이원화하지 않고 친생부인 허가 심판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현하셨습니다. 저 또한 이에 동의합니다. 다만 연구자께서는 "혼인관계 종료의 날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녀의 경우 모, 모의 전남편, 또는 생부가 친생부인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방법을 제한하셨는데, '생부' 라는 개념은 법적으로 여전히 명확한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경우 '생부' 가 친생부인허가심판을 구할 수 있는 것에는 일정한 제한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3. 또한 언급한 바와 같이 2015년 사건은 명백히 동거남의 친생자일 개연성이 높은 상황에서 법이 임신의 시점을 기준으로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를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였기 때문에 발생하였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관련 규정을 계속 존치시키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 출생신고와 관련하여 아동의 지위를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합니다. 이는 연구자 께서도 주장하시는 바와 동의합니다.

즉 혼인 성립후 200일 이후 출생자는 모의 배우자의 자녀로 친생추정이 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으나, 다양한 관계형성이 일반화되고 있는 오늘날 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의 임신 시점이 전혼 관계가 유지될 시점이었음을 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얼마나 합리적인지 회의적입니다. 설령 혼인 종료후 바로 재혼한 여성이 100일이 경과한 후에 子를 출산한 경우 임신의 시점을 기준으로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되고 재혼한 남편의 혼인중의 자녀이나

친생추정을 받지 않는 자로 분류될 것입니다. 이 경우 제844조 제3항을 적용하면 자녀는 도리어 전 남편의 친생자로 출생신고에 부를 모의 전남편으로 신고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도리어 부부관계 파탄 후 사실상의 이혼 단계에서 동거와 재혼으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일반적인 경우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법이 혼인관계 종료를 전제로 300일 이내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전혼관계에서 임신 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추정을 두는 것은 혼인관계 종료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법률혼 관계를 우위에 두는 입장에서 판단하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합니다. 동 규정을 존치시키고 아동의 출생신고를 신속하게 하기 위한 새로운 입법을 하는 과정에서 친생부인의 허가 또는 생부의 인지 허가 청구와 같은 제도를 새로 도입하기 보다 제844조 제3항의 친생추정 규정을 삭제하고 혼인관계 종료 후 출생한 자녀는 모의 혼외자로 생부의 인지 가능성을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4. 유전자형 배치 자녀에 대한 친생추정 배제와 친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 의한 부자관계해소를 인정하는 하급심의 입장에 대하여 : 남편이 친생자 아님을 알고도 부부가 자녀를 10년 이상 공동으로 양육해오다가 이혼을 계기로 남편이 변심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6] 부자간에 혈연(유전자형)이 배치된다는 이유를 들어 청구를 인용한다면 자녀의 가족관계와 법률상의 신분이 언제든지 이해관계에 따라 부정되고 변동될 수 있다는 자체가 이미 자녀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부모의 이혼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해서 자녀의 의사와 무관하게 자녀의 신분 변경이 허용되는 것은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는 입장을 취하셨습니다.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는 일면 동의하지만 자녀의 가족관계와 법률상의 신분이 이해관계인에 따라 변동된다는 것을 항상 부정적인 입장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인지는 다소 회의적입니다. 특히 부부가 이혼하는 과정에 남편이 친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사실상 부부관계 뿐만 아니라 부자관계도 파탄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고 보는 것이 더 현실적인 판단이 아닐까합니다. 도리어 친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친생부인의 소의 제척기간 경과로 자는 진실한 혈연관계에 기반한 친자관계를 형성할 기회를 봉쇄당하는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5. 우리 법체계상 자신의 혼인중의 자를 입양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에 대하여 : 모가 혼인 중에 임신하여 출산한 자녀는, 모의 남편과 혈연이 배치되는 경우에도, 출생과 동시에 모의 남편의 혼인중의 자의 신분을 갖게 되며, 모의 남편이 하급심 법리에서 말하는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자'를 입양한다는 것은 자신의 혼인중의 자를 입양하는 것이 되는데, 우리 법체계상 자신의 혼인중의 자를 입양한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나 점차 이혼과 재혼이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만일 모가 전혼관계 종료 후 제3의 남성과의 관계에서 임신하고 다시 다른 남성과 재혼하여 재혼성립 후 200일 이내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출생자는 모의 재혼남과의 관계에서 친생추정을 받지 않는 혼인 중의 자로 (제844조 제2항)이 적용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때 혈연부가 친생추정이 미치지 아니하는 혼인중의 출생자를 친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정하고 인지한 후 재혼 부의 입양에 동의할 경우 모의 재혼 배우자는 자신의 "혼인중의 자"를 입양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인지요? 이 경우 출생자의 친생부는 인지한 부로 모의 재혼 배우자는 입양에 의한 부가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만일 자신의 "혼인중의 자"를 입양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임신 상태에서 재혼한 모의 출생자는 법적으로 인지한 부와의 관계에서 태어난 것을 기준으로 출생당시 모는 분명히 법률상 혼인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혼한 배우자의 친생추정을 받지 않는 "혼인외의 자"로 보아야 하는지요?

6) 서울가정법원 2016. 9. 21. 2015르1490 판결: 피고(자녀)의 모는 원고(전 남편)와 혼인 중에 피고를 임신, 출산하였다. 원고는 피고를 자신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고 16년간 양육해왔으나, 이혼을 계기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혈연(유전자형)이 배치되는 경우에도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전개하며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제48회 "나, 너, 그리고 우리 – 행복찾기 부부캠프" 보고

그동안 제대로 알지 못했던 남편과 아내가 서로 만나는 시간을 가져

- 일 시 : 2019년 11월 2일 ~ 3일
- 장 소 : 양재동 더케이서울호텔 본관
- 참석자 : 서울가정법원의 상담위탁자 부부 16쌍과 자녀 10명 포함 42명
- 강 사 : 이서원(마음편한상담소 소장, 부부갈등문제 진단 전문상담가)
  정지혜 · 이윤정(미술심리치료전문가)
- 진 행 : 차연실 · 박상진 상담위원 외 자원봉사자 5명

I. 프로그램

1. 첫째 날 저녁강의

(1) OPENING

차연실 상담위원이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소개하고 본소 부부캠프의 취지를 전달한 이후, 이서원 소장은 1박2일의 짧은 시간동안 그동안 알지 못했던 남편과 아내를 만나러 가는 시간을 가져보자고 하면서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였다.

(2) 지금 당신을 만나러 갑니다 : 지금 아내를 만나러 갑니다.

1) 부부 대화의 성공 비결과 부부가 잘 지내는 비결

이서원 소장은 대화를 통해 서로의 속사정을 다 알고 한번도 싸우지 않은 한 부부의 사례를 소개하였다. 그 비결은 내 속을 0으로 비워두고, 상대의 이야기를 온전히 듣는 것이었다. 부부 대화의 지분은 50대 50이 아닌 0대 0임을 강조하며 내려놓기와 백기 들기는 모든 대화의 성공 비결이라고 하였다. 또한 영국속담 중 하나인 '발뒤꿈치에 있어야 할 것을 가슴에 두지마라' 를 소개하며, 부부관계가 나아지기 위해선 원가족을 발뒤꿈치에 두어야한다고 말하였다. 처자식을 가까이 두고 원가족은 멀리 두는 것이 정답이며,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를 생각해보고 우선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부부가 잘 지내는 방법임을 강조하였다.

2) 여러 가지 노트 활용

또한 기념일을 기록하는 노트를 사서 기념할만한 일을 기록하는 것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참석자들에게 "오늘 어떤 기념할 만한 일들이 있었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2년 일기 노트를 작성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며 노트 작성을 통해 올해 있었던 일과 내년에 있는 일을 비교해볼 수 있다고 하였다. 일기 노트는 내가 작년에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일을 했는지 알 수 있어서 좋을 뿐만 아니라 희망도 가질 수 있고 작년에 비해 올해 더 좋아졌는지도 함께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나에게 쓰는 편지 노트를 쓰면서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끼는 것도 중요한데, 이런 노트들을 쓰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안정되는 효과를 가져다준다고 설명하였다.

3) 남자와 여자 사용설명서

이서원 소장은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설명해놓은 '남자 사용 설명서' 및 '여자 사용 설명서'를 소개하면서, 캠프에 참석한 부부들이 서로의 차이점에 대해 이해하고 "너는 이렇구나, 나는 이런대" 식의 대화를 직접 해볼 수 있도록 하였다.

 # 활동 1 : 감정 해소의 시간

이어서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노란색 4장의 색지로 부부가 함께 활동하는 시간을 가졌다. 빨간색은 아내, 파란색은 남편, 초록색은 부모님, 노란색은 아이를 뜻했다. 이중 제일 신경 쓰이고 힘들 것 같다고 생각되는 사람의 색 카드를 들어보고, 같은 색끼리 서로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활동이었다. 남편을 고른 아내집단, 아내를 고른 남편집단, 부모님이나 아이를 고른 아내집단, 부모님이나 아이를 고른 남편집단 이렇게 총 네 집단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같은 고민을 가진 사람들끼리 이야기를 나누면서 걱정거리나 감정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다른 사람들은 어떤 고민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들어보며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었는데, 서로 돌아가며 이야기를 하고 각자의 이야기를 공유하면서 상호간 교류가 돋보이는 활동이었다. 이서원 소장은 상담의 두 가지 목적이 '해소' 와 '해결' 임을 밝히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하면서 감정을 해소하는 것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4) 아내를 만나러 갑니다.

 # 사례 1. '원가족이 아닌 우리 가족에 무게를 두는 것이나 자신을 위한 일'

아내에게 결혼 전에 바라던 결혼 생활에 대해 물었더니, 아내는 "남들과 같은 평범한 삶, 즉 아무 일 없고 평온한 삶을 원했다."라고 답했다. 이 부부의 문제는 남편이 처자식을 가슴에 두고 원가족을 발뒤꿈치에 두어야하는데 그 위치가 바뀐 것에 있었다. 남편은 자신이 지금껏 부모님을 우선시하며 살았다고 고백했다. "내가 고집이 세고 자존심이 강한 스타일이라 가슴과 발뒤꿈치가 바뀐 삶을 계속 고집했는데 시간이 지나니 점점 내려놓게 되었다. 우선순위가 잘못되었고 비중이 잘못되었다고 느껴 균형을 이루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우선 술과 담배도 많이 줄이게 되었다. 또한 집에서 화를 많이 내고 아내와 자녀들에게 다그치는 면이 컸는데 어느 순간 자기 자신을 반성하게 되고 마음을 좋게 먹으니 자신도 편해지고 가족들도 더 자유로워져서 좋다."고 하였다. 이서원 소장은 남편이 자신을 성격이 급하고 눈치가 빠르다고 표현하자 내가 나한테 하는 말이 나한테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말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격이 급하고 눈치가 빠르다고 말하는 대신, 스마트하고 시원스러운 성격이라고 긍정적으로 바꿔 말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면 타인을 대할 때도 스스로가 괜찮다고 여기기 때문에 다르게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이다. 남편에게 어떤 계기로 원가족 중심에서 자신의 가족 중심으로 바뀌게 되었는지 물었더니, 남편은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결과를 발견하고 어느새 부모님과도 멀어진 자신을 보고 반성했다고 했다. 한쪽에 무게를 두면 다른 쪽이 상대적으로 소홀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혼한 가족에 무게를 두는 것이 본인을 위한 일임을 다시금 강조하였다. 이어서 아내가 남편에게 바라는 점을 물었는데 아내 역시 남편이 집안일에 너무 신경을 많이 쓰는 것보다 본인의 일에 더 충실하고 본인 중심으로 좀 더 생활했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이서원 소장은 남편이 결혼해서 꿈꾸는 집과 아내가 결혼해서 꿈꾸는 집이 분명 다른데 보통은 자신이 꾸는 꿈만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부부가 제일 먼저 할 일은 아내가 머릿속에 그리는 집과 내가 머릿속에 그리는 집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활동 2 : 남자와 여자는 결국 다르지 않다.

이서원 소장은 참석자들에게 여자와 다른 남자의 특징을 말해보라고 하였다. 여자에게는 없는 남자의 특징으로는 근육질, 단순함, 힘이 센, 수염, 군대, 털, 호르몬, 발냄새, 정자 등이 있고, 반면 남자에게는 없는 여자의 특징으로는 부드러움, 복잡함, 임신, 출산, 말빨, 바가지, 질투, 애교, 욕심, 손톱, 화장 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그리고 나서 남자의 특징 중 여자에게도 있는 것을 골라서 제거하자 남자호르몬과 정자 빼고는 지워졌다. 반대로 남자에게도 있는 여자의 특징을 지우자 임신과 출산만 남았다. 결국 우리가 생각했던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은 '여자는 이래야한다' 또는 '남자는 이래야한다'는 고정관념에 불과했음을 깨달을 수 있었다. 결국 남녀차이는 생물학적 차이밖에 없으며 성별분업과 그 외의 남녀 차이는 모두 사회적으로 학습된 결과라는 점을 설명하면서 첫날 강의를 마쳤다.

2. 둘째 날 오전 강의

⑵ 지금 당신을 만나러 갑니다 : 지금 남편을 만나러 갑니다.

1) 아내와 남편은 날씨와 같다.

아내와 남편이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표정이 어떠한지 맑은지, 흐린지 날씨로 표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서원 소장은 참석자들에게 "내 아내 또는 남편은 날씨와 같다. 내 기분과 상관없다."를 따라 말하도록 했으며, 내가 날씨를 바꿀 수 없듯이 아내와 남편 또한 바꿀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행복한 부부의 특징 중 하나는 바로 다른 사람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2) 남편을 만나러 갑니다.

 # 사례 2. '아이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다.'

남편은 맞벌이를 하다 보니 자녀가 혼자 있는 시간이 많고 대부분의 시간을 게임을 하면서 보내는 것이 걱정이라고 털어놓았다. 아내는 자녀가 방바닥이나 아무 곳에 쓰레기를 박아두거나 음식을 몰래 먹고 쓰레기를 숨겨두는 버릇을 고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서원 소장은 부부에게 "아이가 어떻게 되길 바라세요?"라고 물었다. 아내는 남편과 자신의 양육관이 다르다며, 남편은 억압적으로라도 자녀가 공부도 잘하고 번듯한 직업을 가지길 바란다고 하였고 자신은 공부는 못했더라도 아이가 뭘 잘하고 흥미를 가지는지에 관심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아이가 정리정돈을 잘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서원 소장은 "아이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다."라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런 마음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아이를 혼낼 마음이 사라진다고 설명하였다. 그것은 습관의 문제이지 아이의 인성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습관을 고쳐주면 금방 해결될 문제이다. 어떻게 정리하는지 요령을 아이에게 알려주면 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쉽게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라고 정리하였다.

 # 사례 3. '해결사에서 해소사로'

남편은 결혼생활 3년 내내 아내와 싸웠는데 최근에 와서 사이가 좋아졌다고 했다. 맞벌이 부부인데 아내가 직장에서 쓰는 가르치려는 어조가 집에 와서도 이어지는 것이 고민이라는 점과 아내가 힘든데 표현을 잘 안 해서 걱정된다고 하였다. 아내는 치열하게 싸웠던 지난 3년을 돌아보면 남편이 스트레스를 건강하지 않은 방법으로 푸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하지만 아내는 자신의 아버지가 아플 때 남편이 아버지를 진심으로 보살펴주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 부부관계 회복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고 말했다. 아내는 자신의 방식을 남편에게 강요하면서 남편으로 하여금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지 못하게 방해한 것은 아닐까 반성하며 서로를 존중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였던 것 같다고 고백했다. 이에 이서원 소장은 한 가지 방법을 추천하였다. 화이트보드를 사서 냉장고에 걸어두고 표를 만드는 것이다. 보드에 남편과 아내 이름을 각자 쓰고, 오늘 나의 컨디션을 백점만점 기준으로 적으면 점수가 더 낮은 사람이 오늘 대화의 주인공이 된다. 이 방법을 쓰면 쓸데없는 감정 소모전이 없어지고 서로 눈치 보는 시간이 없어져서 좋아서 실제로 많은 부부에게 적용했을 때 효과가 있었다고 했다. 단 투명인간처럼 상대가 말하는 동안 끼어들지 않

아야 하고, 대화를 다 듣고 나서 "그래서 어땠어?",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를 물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부부사이는 누가 맞고 틀리고를 가려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고민이나 문제를 해결하려 나서는 것보다 들어주고 공감해주며 감정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하였다.

3. 자녀 미술치료 프로그램
-「그림을 통해 나를 찾는 여행」

이번 부부캠프에서도 자녀들을 대상으로 "그림을 통해 나를 찾는 여행"이라는 주제 하에 토요일과 일요일 양일간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1) 유아 및 아동 프로그램

▶ 강사 : 정지혜(미술심리치료전문가)

정지혜 미술심리치료전문가는 보육과 안전이 우선시되는 5-8세 유아 및 아동을 대상으로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첫째 날에는 '안녕! 반가워' 활동을 통해 자기를 소개하고 친밀감을 형성하며 신체활동을 통해 이완한 후, '소중한 존재' 활동을 통해 창의적인 자기표현을 촉진할 수 있도록 도왔고, 'Hello! 앵무새' 활동을 통해 다양한 색을 사용하여 자기감정을 표현하는 시간을 가졌다. 둘째 날에는 'My Bag' 활동을 통해 창의적으로 자기표현을 함으로써 성취감과 자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왔으며, 'I can do it!' 활동을 통해 집단 응집력을 증진시키고 성취감을 통한 긍정적 자기인식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 참석한 유아 및 아동 모두 안전한 환경에서 미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이는 작품의 완성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성취감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2) 아동 및 청소년 프로그램

▶ 강사 : 이윤정(미술심리치료전문가)

이윤정 미술심리치료전문가는 창의적이고 안전한 환경에서 자기 내면의 다양한 정서를 표현할 수 있도록 9세 이상의 아동 및 청소년 대상으로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첫째 날에는 '나를 소개합니다' 활동을 통해 집단의 친밀감을 형성하도록 돕는 시간을 가졌다. '스트링아트 만들기' 활동에서는 원하는 색의 실로 내 마음을 표현함으로써 몰입의 경험을 할 수 있었고, '드림캐쳐 꾸미기' 활동을 통해 자신의 욕구를 탐색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왔다. 둘째 날에는 '나의 빛' 활동을 통해 내 마음 속의 빛을 표현하여 소망과 자원을 발견하는 시간을 가졌고, '부직포가방 꾸미기' 활동을 통해 서로를 칭찬하면서 지지적 상호작용을 경험하도록 하였다. 참석한 아동 및 청소년들은 미술작업 주제와 매체에 높은 흥미와 관심을 보이며 몰입하는 모습을 보였고, 서로 간 우호적인 모습으로 정해진 규칙을 잘 따르며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증진시키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II. 정리

이번 캠프는 부부가 서로의 다른 점을 이해하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며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바꾸려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결혼하여 새롭게 공통된 삶의 부분이 생겼다. 하지만 결혼을 해서 누군가의 아내 또는 남편이기 전에 각자 살았던 삶의 양식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어야 한다.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개인이 온전히 '나 자신'으로서 존중받고 '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부부가 서로 노력해야 한다. 상대를 억지로 바꾸려 하거나 각자가 생각하는 틀에 끼워 맞추려고 할 때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번 캠프에 참석한 부부들이 '나, 너 그리고 우리'처럼 각자의 삶을 존중해주고 캠프에서 배운 지혜와 조언들을 기억하여 궁극적으로 행복한 '우리'가 되기 위해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며 살기를 기대한다.

차연실 상담위원

가정상담12월호-내지 2019.12.5 3:44 PM 페이지24 CTP-1

‘세상의 바닥이라 생각했지만, 아이가 저를 이끌어 주고 세상은, 사람들은 좋은 이들이 더 많네요’

- 일 시 : 2019년 11월 14일(목) 오전 9시
- 장 소 : 용인 에버랜드
- 참가자 : 비혼모 37명
  자녀 24명
  조은경, 천다라, 권지연 상담위원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애란네트워크 직원 및 자원봉사자 등 총 75명
- 지 원 : 삼성생명 사랑의 열매

2019년 11월 가을의 절정에 삼성생명 사랑의 열매 지원으로 본소에서는 비혼모 37 가정과 함께 에버랜드로 가을나들이를 다녀왔다. 수능한파로 갑자기 기온이 매우 낮아져 엄마와 아이들이 외부 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있을까 걱정되었다. 그러나 용인 에버랜드로의 나들이를 위해 버스에 오르는 엄마와 아이들의 즐거운 웃음소리와 활기찬 발걸음에 차가운 아침 공기조차 시원하게 느껴졌다. 에버랜드에 도착하여 참가자들은 비혼모 가정에 필요한 법률 강의를 듣고 법률상담을 받았다. 그리고 에버랜드 최고 인기 시설인 로스트밸리에 Q-PASS로 입장하여 관람하는 등 놀이시설 체험과 공연을 관람하였다. 이번 일일캠프를 통해 참가자들은 자녀와 즐거운 추억을 쌓았을 뿐만 아니라 비혼모 가정에 꼭 필요한 법교육과 상담도 받을 수 있어서 매우 유익했고, 심리적 · 정서적 지지와 용기도 얻었다는 후기를 나눴다.

○ 프로그램 개관

1. 「비혼모 가정을 위한 법률 교육 및 상담」

에버랜드에 도착하여 참가자들은 세미나실에 모여 비혼모들이 꼭 알아두어야 할 자녀의 출생신고, 자녀의 성과 본, 인지, 양육권과 친권, 면접교섭권, 입양, 양육비청구, 양육비 이행강제 등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강의 후에는 인지, 양육비 청구, 파산 · 면책 등의 법률 상담이 있었다. 교육 후 진행된 상담을 통해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참가자들에게는 상담소를 방문하여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2. 「용인 에버랜드 체험」

참가자들은 교육 후 용인 에버랜드에서 자녀와 함께 체험활동을 하였다. 자녀들이 좋아하는 ‘로스트밸리’ 외 다양한 시설과 공연을 관람하며 자녀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 참가자들의 소감

- 육아에 지친 내가 소풍으로 즐거움을 얻어가고 묵은 육아 스트레스를 푼 것 같다. 가정법률상담도 받고 소풍와서 즐거움도 찾아가 일석 이조의 시간이었다. 추운 날씨로 인해 고됐지만 최고의 날이다. 맛있는 거 먹고 놀이기구 타고 동물들도 보면서 일상생활에서 불가능한 것들을 가을 소풍을 통해 할 수 있게 돼서 나는 참 가법캠프를 소중하고 감사히 생각한다.

- 비슷한 연령대의 엄마들과 아이들을 알게 되었고 공통된 주제로 수다를 하면서 우리들만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추운 날씨를 걱정했지만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배려로 가슴까지 뻥 뚫려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 평소에 많이 우울하고 힘들어서 아이와 잘 놀지 못하고 아이와 소통이 많이 부족했는데 오늘 캠프에 와서 아이의 소중함을 깨닫고 좋은 생각으로 바꿔갈 수 있는 힘이 생긴 것 같아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앞으로도 좋은 엄마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오늘 에버랜드 캠프 너무 재밌었다. 많이 추웠는데 좋은 추억을 만든 것 같아 좋았다.

- 사파리에서 동물 구경도 하고 물개쇼도 볼 수 있어 정말 좋았습니다. 구경하는 동안에는 마음의 짐을 잠시 내려놓고 편안한 마음으로 기분 전환한 것 같아 좋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정법률상담 교육을 통해 걱정거리를 한결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 어젯밤 아이와 함께 무얼 탈 수 있을까 찾아보다가 아이가 랩터레인저를 타고 싶다하여 점심 먹은 뒤 가서 타게 되었는데, 들어가기 전가지 재밌을 것 같다던 아이가 랩터를 보자마자 겁에 질려 눈물을 머금고 도망다니던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모습이라 평생 추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점심도 주변 엄마들의 도움으로 밖에서도 맛집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멋진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있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 아이출산 후 굉장히 큰 트라우마가 생겨 아무 활동 없이 모든 활동을 다 끊고 아이를 육아함에도 불구하고 두문불출이었네요. 아픈 시간 살아 내려 하는 본능이 있는가 봅니다. 병원도 다니고 심리치료도 받아가며 2019년 늦가을 다시 세상 문을 두드렸습니다. 긴 시간 전세버스를 타는 것부터가 제겐 약을 먹어야 할 만큼 큰 고민이었습니다. 긴 시간 사람들을 안 만나고 지내 왔기에 맞 딱드릴 모든 게 다 두려울 뿐이었네요. 그럼에도 낼 수 있는 용기는 아이 덕분인가 봅니다. 그 아이가 저를 가장 바닥으로 떨어뜨렸다고 미워도 하며 살 만큼 어리석었는데 결국 그 아이가 저를 이끌어주네요. 막상 부딪혀보니 세상은, 사람들은 역시 좋은 분이 더 많네요. 공황장애로 놀이 기구 하나 잘 못 탔지만 아이의 즐거워 하는 얼굴에 그 미소에 하루가 이처럼 뜨겁고 보람차다는 희열을 오랜만에 느꼈습니다. 우리 모녀에게 이런 추억의 시간 만들어주심에 고개 숙여 인사드립니다. 조금씩 조금씩 나아가 볼게요. 우리 모녀가 쉬어갈 곳이 되어 주고 기다려주는 배려에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아이와의 추억 만들어주심에 정말 고맙습니다.

조은경 상담위원

기/획/연/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00년을 향해 ⑳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민국 법률구조의 역사**

조사 · 연구사업과 인권운동 (3)

해외동포와 이민가정

상담소가 아동의 인권과 노인의 문제 등 가족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 관심과 활동의 폭을 넓혀가던 1970년대는 또한 해외동포들과 관련된 인권문제가 발생하여 음양으로 이들의 법률구조에 노력해야 했다.

그 하나는 조총련에 의해서 두 아들을 북송선에 태워 보내야 했던 재일동포 김광자 사건이었고 또 하나는 MBC 라디오의 '법창야화'에서 '내 고향으로 날 보내주'라는 다큐멘터리로 방송되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던 재미동포 이철수 사건이며 또 하나는 프랑스에 입양된 두 고아의 인권과 관련된 사건이었다.

이들 사건 중 특히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하다가 정당방위로 불가피한 살인을 하게 된 이철수 사건에서는 상담소의 적극적인 노력과 재미동포들의 구명운동으로 무죄판결을 얻어내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김광자 사건, 이철수 사건, 프랑스 입양아 사건 등은 당시 우리 동포들에 대한 현지 사회의 갈등과 압박으로 빚어진 인권문제였다.

1960년대 후반부터 우리나라에서 해외이민이 활발해지기 시작하고 이와 더불어 해외취업 진출이 눈에 띄게 늘어나자 해외 이민자들 및 해외 취업자들과 고국에 남겨진 가족들 간의 가정문제 또는 국제결혼으로 인한 문제가 늘어나게 되었다.

이민가정 문제의 몇 가지 유형을 보면 첫째, 남편이 먼저 해외이민을 가면서 현지에서 생활기반을 잡은 후 가족을 초청하겠다고 하는 경우에 생기는 문제이다. 이런 이민자들 중에는 생활의 터전을 잡기가 여의치 않아 가족 초청을 차일피일 미루다 현지 여성과 사실혼의 부부관계가 되어 고국의 본처를 상대로 현지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한국에 남아 자녀를 키우고 시부모를 부양하면서 고생하던 부인이 바다 건너 멀리에서 날아온 이혼소장을 보고 망연자실하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실정이었다.

또 유학이나 취업을 위해 외국에 나간 남성이 현지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 그곳 여성과 결혼한 후 시민권을 가지면 현지 여성을 버리고 고국의 처자를 데려가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경우 현지에서 피해자가 된 여성도 대개는 동포여성이어서, 동포사회에서는 이렇게 이용당하고 피해자가 된 여성의 인권문제로 물의가 일어나는 경우 또한 적지 않았다.

** 상담소는 지난 2016년을 창립 60주년의 해로 보내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법률구조 기관으로써 자부심을 가지고 백년을 향해 나아간다는 전망을 세운 바 있다. 이러한 전망의 토대로 삼고자 상담소의 역사를 바로 알고 널리 알리기 위해 상담소의 연대기를 연재한다. 상담소는 지난 2009년 「번민하는 이웃과 함께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50년사」를 펴낸 바 있으며, 이 연재는 이를 기초자료로 하였다.

외국의 시민권을 가진 미혼 남성들이 고국의 여성과 결혼하고 싶다고 귀국하여 서둘러 선을 보고 전격 결혼, 혼인신고까지 한 후 초청장을 보내겠다고 하면서 출국하고는 감감 무소식인 일종의 국제 사기결혼도 있었다. 이 경우 초청장을 애타게 기다리며 2~3년을 보내다 끝내는 사기결혼임을 알고 호적정리나 하겠다고 상담소를 찾는 여성도 적지 않았다.

이러한 해외이민자들의 가정문제에 못지않게 심각한 문제로 등장한 것이 1970년대부터 본격화하고 있던 해외취업자들의 가정문제였다. 이런 일이 대규모로 발생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의 베트남전 때 한국 남성들이 군인으로나 노동자로 그 나라에 많이 갔기 때문이다. 이것은 1970년대 초부터 시작된 서독 광부 취업 및 서독 간호원 취업으로 이어졌다.

베트남에 취업한 사람들 중에는 베트남 여성과 현지에서 결혼하는 경우가 하나 둘 늘어나 생활비 송금문제나 이혼제기로 고국의 처자와 가정문제를 야기하는 경우가 자주 생기게 되었다. 베트남 통일 이후에는 난민으로 가장하여 제3국으로 망명 아닌 망명을 하여 제3국 국적으로 취득한 후 부인을 버리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서독에 광부와 간호원들이 대거 진출하게 되자 이번에는 기혼 광부와 간호원들이 현지에서 동거하면서 고국의 처자를 모른 척 하는 경우가 생기기 시작했으며, 서독에 이어 동남아, 미주, 유럽 등으로의 취업이 늘어나자 곳곳에서 이와 같은 가정문제가 잇달아 발생했다. 1970년대 후반부터는 중동 취업자가 크게 늘자 이들의 가정문제도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런데 중동 취업자의 경우 문제의 양상은 좀 특수했다. 남성들이 현지 여성과 일으키는 문제보다 고국에 남아있는 아내들이 가정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중동 취업자의 경우 아내가 일으키는 가정문제는 첫째로 남편이 송금해 온 돈으로 하는 부동산 투자였다. 또 계를 해서 목돈을 벌려고 욕심을 부리다 사기를 당해 돈을 모두 잃고 남편이 귀국할 무렵 잠적해 버리는 경우도 있었다. 귀국한 남편은 부인이 돈을 탕진한데 실망하여 이혼을 제기하려고 상담소를 찾았다. 또 남편이 부쳐온 돈으로 춤바람이나 도박, 다른 남성과 교제 등에 빠졌다가 가정불화를 일으키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또 다른 경우는 중동 취업자가 월급을 아내에게 송금하지 않고 부모나 친척에게 하는 특수한 사례이다. 이 경우 시부모에게 생활비를 타 쓰게 되는 아내 쪽은 결국 시집과 갈등을 겪게 되고 상담소를 찾아오는 것이었다.

이처럼 해외취업자나 동포들이 제기하는 가정문제는 국민들의 해외진출이 늘어나는 1970년대 말부터 본격적인 사회문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의 경우, 사건 당사자들이 한국과 외국으로 떨어져 있어 얼굴을 맞대고 조정할 수 없는 형편이고, 이민자들이 현지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했을 때, 양국의 법률이 다르고 국가 간의 협약이 없기 때문에 국내의 피해자를 도와 법률구조를 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따라서 상담소로서는 급증하는 해외취업자 및 이민동포들이 야기하는 가정문제들에 대해 관심과 우려를 더욱 깊게 가지게 되었던 것이다.

편집부

인·터·넷·상·담

Q 저는 현재 7살 손자를 키우고 있습니다. 비혼모인 제 딸은 손자를 임신했을 때는 입양 보내겠다고 했으나, 출산 후 생각이 바뀌어 아이를 키우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제 딸은 손자를 두고 가출해 버렸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손자를 집에 데려와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손자의 친권자가 아니어서 손자의 용돈통장을 만드는 일조차도 해줄 수 없습니다. 딸은 휴대폰 번호까지 바꿔버린 상황이라 어떠한 협조도 받을 수 없습니다. 제가 손자의 법정대리인이 될 수 있을까요?

A 친권은 자녀의 양육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포괄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사항으로는 보호 · 교양의 권리의무 및 거소지정권 등이 있습니다(민법 제913조, 제914조). 자녀의 재산에 관한 것으로는 자녀의 재산관리권, 법정대리권 및 동의권 등이 있습니다(민법 제916조, 제920조).

그러나 민법은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제924조) 또는 "거소의 지정이나 징계, 그 밖의 신상에 관한 결정 등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유가 있어 자녀의 복리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제924조의2) 등에는 친권의 상실이나 친권의 일부 제한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민법은 친권의 상실 또는 제한으로 미성년자녀 보호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성년후견제도를 두었습니다(민법 제928조).

귀하의 경우 우선 따님에 대한 친권 상실과 귀하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는 친권 상실 사유에 이르지 않는 경우라면 따님의 친권 중 보호 · 교양권, 거소지정권, 징계권, 기타 양육에 관련된 권한의 제한과 법률행위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상실시키고, 귀하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해줄 것을 청구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귀하가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면 법정대리인으로서 손자의 신분행위에 대한 대리권과 동의권을 가지며, 재산보호를 위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므로 손자의 용돈통장을 만들어 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최수진 상담위원

좋은 책

아이들의 계급투쟁

브래디 미카코 지음
노수경 옮김

사계절,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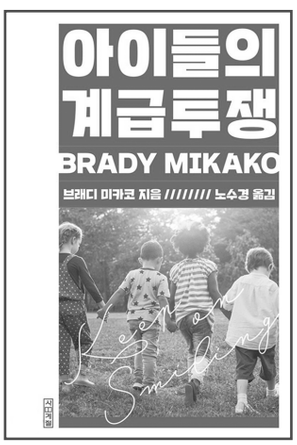

몇 편의 인생영화 가운데 좌파 영감 켄 로치 감독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가 있다. 장면마다 구구절절하여 할 말이 많지만, 싱글맘 케이티의 푸드 뱅크 장면은 충격적이었다. 이 책 「아이들의 계급투쟁」은 두 아이를 둔 싱글맘 케이티가 어떻게 그 푸드 뱅크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준다. – 실제 푸드 뱅크에서 영화의 케이티와 같은 일이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는 부분이 있는데, 늘 현실은 영화 그 이상임을 다시 한 번 상기하게 된다.

펑크 음악에 빠져 영국으로 건너간 일본인 미카코는 영국의 빈곤 지역 무료 탁아소에서 보육사로 일하며, 정치의 변화가 아이들의 탁아소에 미치는 변화, 가난이 낳은 혐오와 차별 같은 것들이 어떻게 아이들의 일상을 무참히 침식하는지 생생하게 기록했다. 저자는 이 탁아소에서 일했던 두 시기, 즉 2008~2010년과 2015~2016년을 각기 '저변 탁아소 시절'과 '긴축 탁아소 시절'로 칭한다. 책의 구성은 저자가 처음 무료 탁아소에서 자원봉사를 하던 시기 즉 저변 탁아소 시절을 뒤로 배치하고, 보육사 자격증 취득 후 중산층 전용 민간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다 다시 이 탁아소로 돌아와 일한 시기 즉 긴축 탁아소 시절을 앞에 놓았다. 그 사이에는 영국의 집권 정당이 노동당에서 보수당으로 바뀌면서 사회 전반의 복지제도가 축소되는 '긴축'이라는 큰 변화가 있었다. 복지제도가 밑바닥 사회를 어느 정도 지탱해주던 '저변 시대'에 비해, 생활을 위한 지원금이 모두 끊긴 '긴축 시대'에는 밥을 굶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인종차별을 넘어선 계급차별이 노골적으로 일상화 된다.

저자는 부모의 빈곤과 정서적 불안, 폭력과 무기력을 그대로 떠안은 아이들의 면면을 보여주며 합리적 경제의 탈을 쓴 긴축재정이 특히나 경제적 약자인 사람의 마음과 사회의 여유를 얼마나 쪼그라들게 하는지를 가감 없이 보여준다. 나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하루하루를 살아가려 애쓰는 사람들과 그들과 연대하기 위해 손을 내미는 사람들, 국가의 손이 닿지 않는 세계를 꾸려나가는 아래쪽 공동체의 저력을 증명하며 그 힘은 끝내 서로를 존엄한 인간으로 대하는 것에서 비롯된다고 말한다. 그리고 긴축재정의 민낯을 보여준다. 과연 생활보호수당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은 긴축 이후 술과 약물을 끊고 직장을 구해 열심히 일하게 되었을까? 안타깝게도 몇 년 사이 영국은 밥을 굶는 사람이 속출하는 나라가 되었고, 백인 하층과 이민자들이 서로 몸을 부대끼며 갈등도 하고 이해도 하며 살아가던 밑바닥 사회는 혐오의 전장이 되고 말았다. 합리와 긴축의 이름으로 국가가 길바닥에 내버린 사람들은 제 힘으로 일어서지 못하고 그대로 굶어 죽었다. – 아니면 다니엘 블레이크처럼 속절없이 죽거나 – 이런 변화 속에서 탁아소는 굶주린 이들을 위한 푸드 뱅크에 자리를 내주고 문을 닫았다. 탁아소가 정치에 완패한 것이다. 정치와 삶이란 이렇게나 밀접하다.

우리 사회의 길은 아무쪼록 이것과 달라야 할 것이다.

이 숙 현 편집부장

가정상담12월호-내지 2019.12.5 3:44 PM 페이지30 CTP-1

영화이야기

82년생 김지영

감독 김도영

출연 정유미, 공유, 김미경

이렇게까지 한 편의 소설이, 한 편의 영화가 한국 사회를 뒤흔든 적이 있던가? 조남주 작가의 2016년 소설 〈82년생 김지영〉이 김도영 감독의 2019년 영화 〈82년생 김지영〉으로 탄생하기까지, 지난 4년 동안 대한민국은 유례없이 뜨거웠다. 사실 좀 의아했다. 이를테면 전경린의 소설을 영화화한 변영주 감독의 〈밀애〉라든가 양귀자의 소설을 영화화한 장길수 감독의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 등이 먼저 등장했더랬다. 당시 유부녀의 '불륜'이라든가 비혼 여성의 '공격적인' 페미니즘 등이 잠깐 '화제'가 됐던 것으로 기억하지만, 이 정도의 반응을 끌어내진 못했다. 잠깐 '일탈'하는 여성들은 곧장 원래 자리로 돌아오거나 혹은 단호한 제제를 당하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비교적 관대하게 받아들여졌던 것일까? 그에 비해 '중산층' 여성인 김지영, 어떤 사람들의 눈에는 딱히 불평할 게 없어 보이는데 '배부른' 투정을 하는 김지영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던 것일까?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어떤 상징에 대한 극심한 분노와 혐오는, 작가가 '통계'에 기대어 만들어낸 아주 평균적인 30대 여성이라는 데서 기인하는 것 같기도 하다. 비교적 안온한 가정에서 성장했고 대학을 졸업한 뒤 취직하고 좋은 남자와 결혼하고 가끔 성희롱을 당했고 낯선 남자들의 거친 언사에 반박하고 싶어도 해코지 당할까봐 무서워서 자리를 피하는 쪽을 선택하며 속으로 꾹 눌러 삼키기만 했던, 그런 아주 평범한 여성 말이다.

1982년 생 김지영(정유미)은 언니와 남동생 사이의 둘째 딸로 살았고, 대학교에서 만난 대현(공유)과 연애결혼 했다. 취직에 성공했고, 아이를 낳아도 오래오래 일하면서 멋지고 유능한 간부급 사원으로 남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딸 아영이 태어난 후 지영은 결국 사직서를 썼고 전업주부로 살고 있다. 어느 날부턴가 지영은 가끔씩, '다른 사람'이 된다. 대현은 지영이 상처받을까봐 두려워, 정신과 상담을 권유하는 것으로 빙 돌려 말할 뿐이다.

원작과 영화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지영의 엄마에게 더 크고 입체적인 면모를 부여했다는 점이다. 엄마는 외할머니로부터 (그 당시에는 당연했을) 딸로서의 의무와 희생을 강요당한 인물이며, 딸 지영의 위기를 깨달았을 때 다시 한 번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고자 한다. 하지만 지영은 '빙의'를 통해 엄마의 희생을 막는다. 엄마의 딸이 또 자신의 딸을 낳았을 때, 엄마를 엄마로서 이해할 수 있게 되었을 때, 딸은 더 이상 딸의 위치에만 머무르며 응석을 부리지 않는다. 영화의 클라이맥스이자 대부분의 관객에게 폭발적인 감정이입을 제공하는 대단히 감정적인 장면, 딸이 엄마에게 이해와 사랑과 위안을 '거꾸로' 건네는 순간 영화 〈82년생 김지영〉은 원작보다 좀더 깊이, 여성간의 연대와 화해의 가능성을 탐색한다.

물론 여기에는 남성 가족 구성원들의 자기반성과 변화가 반드시 요구됐다. 지영의 아빠와 남동생, 남편 대현 역시 남성 가부장 중심 가족제도에서 편견을 주입받으며 성장했지만, 지영을 통해 그들도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제시한다. 그런 의미에서 영화 〈82년생 김지영〉은 사실 대단히 온건한 가족 드라마다. 등장인물 모두에게 따뜻한 배려와 차분함을 잃지 않는 전체적인 톤은, 그래서 원작 소설과 영화 모두에 저주에 가까운 악평을 쏟아내던 이들이 대체 뭘 본 것인가를 의아하게 만들 만큼, 어쩌면 영화 전체적으로 '평균'을 지켜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던 것인가 싶을 만큼 온건하다.

한국의 가족 제도는 위기 상황마다 구성원 누군가에게 지나치게 많은 책임을 덧씌우는 식으로 '사적' 해결을 당연시해왔다. 사회적 시스템이라는 안전망의 튼튼한 구축보다 '가족 문제는 가족이 알아서'라는 관행 유지가 지속되어온 것이다. 소설 혹은 영화라는 장치를 통해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가족'이라는 상이 얼마나 연약하고 위태롭고 때로 위험한지에 대한 공개적 문제제기가 지속될 수 있다면, 변화가 아무리 천천히 진행되더라도 유의미할 것이다. '82년생 김지영'이라는 가상의 존재 혹은 지극히 현실적인 평균의 존재가 지난 4년 간 한국 사회에 일으킨 뜨거운 논란은 이제 시작일 뿐이며, 더 많은 논쟁적인 존재들이 나와야 한다.

김용언 영화 칼럼니스트

가정상담12월호-내지 2019.12.5 3:44 PM 페이지31 CTP-1

2019년도 정기 후기 이사회 2020년도 사업계획 등 검토

상담소의 2019년도 정기 후기 이사회가 지난 11월 21일 열렸다. 박양덕, 김의재, 조대연, 김영옥, 김명순, 곽배희, 김병후 이사 및 한미영 감사가 참석한 가운데 차명희 이사장의 주재로 열린 이 날 회의는 개회, 전회 회의록 낭독, 안건토의, 폐회 순으로 진행되었다. 안건토의에서는 2020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그리고 인사규정 · 복무규정 개정안에 대한 심의 · 의결이 이루어졌다. 또한 기타 안건으로 상담소 지부 문제와 관련하여 진행 상황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관련사진 2면)

가정폭력전문가 간담회 개최

본소에서는 지난 11월 29일 가정폭력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재 본소에서 진행 중인 가정폭력 관련 프로그램을 평가 및 점검하고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곽배희 소장은 인사말을 통해 가정폭력의 문제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폭력을 쓰게 된 동기와 원인을 파악하여 가정회복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이를 위해 상담소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전문가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 날 간담회에는 2019년 본소에서 가정폭력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한 전문가인 우애령 박사(사회복지학 박사, 작가), 김혜선 교수(강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희진 교수(명지대학교 방목기초교육대학), 이서원 소장(마음편한상담소), 장희숙 교수(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정윤경 교수(연세솔루션상담센터)가 참석하여 가해자의 폭력성행교정 및 피해자의 안전도모와 정서적 지원이라는 양측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상담의 중요성을 언급하였고, 점차 증가하고 있는 정서적 폭력에 대비한 대응방안 및 프로그램화의 방법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참석자들은 가해자들을 위한 프로그램 및 상담과 관련 여성가족부의 소극적 태도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이 자리에는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이숙현 편집부장, 차연실 상담위원이 함께 참석하였다.

가정상담12월호-내지 2019.12.5 3:44 PM 페이지32 CTP-1

2019년도 전화상담 자원봉사자 모임

11월 13일 상담소는 지난 일 년 동안 상담소에서의 봉사 활동에 대한 감사를 전하기 위해 전화상담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점심식사 모임을 가지고 그간의 노고에 대해 고마움을 전하였다. 이날 모임에는 강경숙, 김인숙, 김정혜, 문은전, 문은희, 유문숙, 이병주 자원봉사자와 본소 곽배희 소장,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이숙현 편집부장, 조은경 상담위원 등이 참석하였다.

미성년후견인 선임 소송 관련 가정위탁 법률 · 정책개선 회의 참석

11월 1일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주최로 열린 미성년후견인 선임 관련 가정위탁 법률 · 정책개선회의에 최수진 상담위원과 김민선 변호사가 참석하였다. 본소는 2016년부터 가정위탁아동의 입양 및 미성년후견인 선임과 관련된 법률구조 지원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탁아동의 미성년후견인선임 매뉴얼 추진상황과 미성년후견인 선임 사건의 향후 진행방향을 논의하였다. 본소는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앞으로도 위탁아동에 대한 미성년후견인 선임 무료법률구조사업을 더욱 활발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11월 21일, 정신과전문의 김병후 원장(본소 이사)이 '부부갈등에 관여하는 자녀와의 관계' 라는 주제로 강의하였다. 이번 강의에서 참가자들은 강의를 듣고, 각자의 의견을 나누고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사는 부부사이가 좋지 않아 자주 싸우게 되면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커지게 되고, 이로 인해 자녀는 자신의 미래 결혼생활도 부정적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따라서 부부는 부부관계가 어떠한지 항상 깊이 생각해보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다음 강의는 오는 12월 19일(목) "마음과 언어" 라는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출장 상담 및 법교육

법의 생활화 운동의 일환으로 본소의 법 교육이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다. 출장 법 교육은 가족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가정폭력특례법 등을 주제로 하며, 본소 상담위원들의 상담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충실한 강의로 넓은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본소에서의 실습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11.06. 순회상담-과천여성비전센터
- 복미영 상담위원

11.14. 한국건강가정진흥원-가족법특강(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종사자교육)
- 복미영 상담위원

11.20. 순회상담-과천여성비전센터
- 김진영 상담위원

가정법원 출장상담

조경애, 박소현, 조은경, 복미영, 김진영, 최수진,
전규선, 천다라, 유혜경, 권지연 상담위원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은 11월 12일 여성정책연구원이 주관한 '다양한 가족의 포용을 위한 제도적 과제 전문가 좌담회' 에 참석하였다. 14일에는 법무부가 주관하는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 에 참석 하였고, 19일에는 미혼모지원네트워크와 김상희 의원실, 인구정책과 생활정치를 위한 의원 모임이 공동주최한 '미혼부자녀 출생신고 현황과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토론발표를 하였다. 22일에는 인천가정법원과 인하대학교, 인천일보가 공동주최하는 '건강한 이혼과 자녀양육을 위한 심포지엄' 에서 토론발표를 하였고, 28일에는 여성가족부가 주최하고 여성정책연구원이 주관한 '가족 다양성 시대, 현행법령의 개선과제' 토론회에서 토론발표를 하였다.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은 11월 7일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 연수회에 참석하였다.

2019년 11월 본부 상담통계

총상담 5,821					
법률상담 (5,266)					
면접	전화	인터넷	서신	순회	지상
963	4,166	111	1	24	1
화해조정		소장 등서류작성		소송구조	
436		76		43	

* 인터넷 정보 이용 47,755건

2019년 11월 한달 간 상담소에서 진행한 총 상담건수는 5,821건이었다. 상담처리별로 살펴보면, 법률상담 5,266건(90.5%), 화해조정 436건(7.5%), 소장 등 서류작성 76건(1.3%), 소송구조 43건(0.7%)이었다.

법률상담 5,266건을 사건내용별로 살펴보면, 2019년 10월에 비해 가사사건의 경우에는 친권 · 양육권(5.6%→6.7%), 양육비(7.4%→7.7%), 면접교섭권(3.0%→3.5%), 혼인무효 · 취소(0.8%→1.0%), 이혼무효 · 취소(0.4%→0.5%), 부양(1.8%→2.1%), 유언 · 상속(6.8%→7.0%), 성변경(1.3%→1.5%), 파양(0.4%→0.5%), 미성년후견(0.4%→0.8%), 성년후견(2.4%→2.6%), 가사기타(6.5%→7.2%)에 관한 상담이 증가하였다. 한편,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임대차(0.1%→0.2%), 채권 · 채무(0.5%→0.7%), 민사기타(0.4%→0.5%),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형사절차(0.2%→0.4%)에 관한 상담이 증가하였다.

법률상담 5,266건을 상담방법별로 살펴보면, 면접상담 963건(18.3%), 전화상담 4,166건(79.1%), 인터넷상담 111건(2.1%), 서신상담 1건(0.0%), 순회상담 24건(0.5%), 지상상담 1건(0.0%) 순이었다.

2019년 월별 총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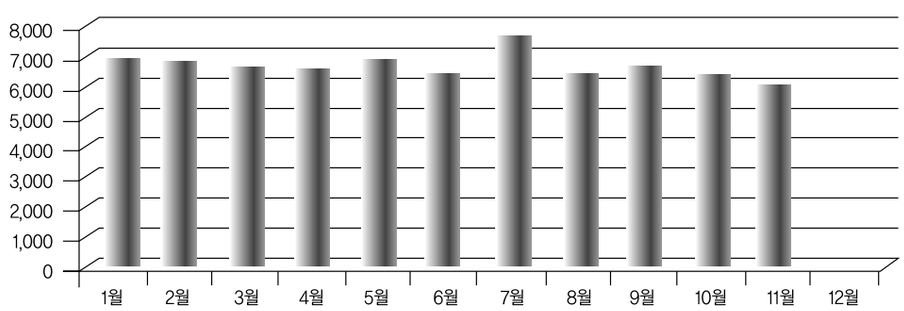

고맙습니다

2019년 11월 자원봉사자

- **전화안내를 도와주신**
  강경숙, 김인숙, 김정혜, 문은전, 문은희, 박선화, 유문숙, 이병주 님
- **주간상담을 해 주신**
  강소영, 강윤영, 강종협, 김수경, 김지원, 김태주, 박수열, 오현희, 유정아 , 윤원섭, 이현정, 이혜민, 임방글 변호사 님
- **야간상담을 해 주신**
  김연두, 김진아, 이승주, 장주용, 전성배, 천정환, 황미옥 변호사 님
- **다문화가정을 위한 영어상담을 해 주신**
  사대진 변호사 님
- **학생 자원봉사**
  강라연, 권윤정, 권지호, 김경민1, 김경민2, 김송희, 김수연, 김준성, 김지연, 김지우, 김혜원, 나현수, 남은결, 노규림, 문채현, 박소언, 박수연, 박지원, 박지윤, 배상준, 석재현, 신유리, 신유림, 엄윤서, 오정훈, 윤여영, 이서희, 이수정, 이수지, 이승철, 이우현, 이은현, 이현학, 임소연, 임지윤, 조예림, 조은비, 진수연, 한봄이, 홍채은, 황인경 님
  국민대학교 법학과 사회봉사 – 노상혁, 전우현, 최서영, 한종선 님
  동국대학교 법학과 사회봉사 – 원찬빈, 정재준 님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사회봉사 – 조주현 님

후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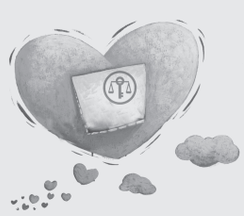

- **일반회원이 되신 분**
  정수철 님
- **운영후원금을 주신 분**
  김용헌, 이현혜, 천정환, 박미라 님

회원이 되시려면

일반회원들은 월 5천원씩 또는 년 5만원, 평생회원은 50만원을 일시 납입해 주시면 됩니다. 이름 밝히기를 원치 않는 분들은 아래의 구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주소가 변경된 회원은 반드시 상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농 협 317-0003-1418-11 가정법률상담소
연락처 : 780-5688 재무회계과

지부 소식과 상담통계

강릉지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가사상담 3회를 실시하였다. 심지현, 심재범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구리 · 남양주지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가사조정 4회, 형사조정 8회를 실시하였다. 이경숙, 정이수, 김효경, 장경아, 황은하, 여지은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군산지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가사조정 4건, 부모양육안내교육을 1회를 실시하였다. 신흥섭, 유수연, 박성미, 최정원 변호사가 소송구조봉사를 하였다.

대구지부

대구가정법원에서 출장상담 42건, 가사조정 5건을 실시하였다. 대구가정법원 협의이혼의무상담제 지원사업으로 부모교육(총 4회, 26쌍 부부)을 실시하였다. 가정폭력행위자 교정 · 치료프로그램과 가정폭력피해자 치료 · 회복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정수희, 이석화, 최은철, 곽경화, 박진수, 전상훈, 정홍욱, 구은미, 윤용원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성남지부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협력사업으로 이혼부부의 미성년자녀양육안내를 성남지원에서 6회,광주시법원에서 3회를 실시하였다. 성남지원 협의이혼의무상담으로 성남지원에서 상담 4회를 실시하였다. 성남시평생학습관, 성남중앙도서관, 관내 동주민센터 등에 상담소 홍보물을 10회 배포하였다. 김승구, 허정택, 문대근, 이주현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수원지부

수원지방법원 사법접근센터 출장상담을 실시하였다. 상담소 부설 보라상담원에서 경찰동행 가정폭력피해자의 가정방문상담을 실시하였다. 강은혜, 공영서, 김현수, 문나연, 박진호, 양승철, 이윤선, 이정호, 전태우, 최강호, 최지희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전주지부

전주지방법원에서 협의이혼상담 3회, 가사조정 6회를 실시하였다. 11월 7일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15일 LH 전주주거복지통합지원센터 출장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홍보를 2회 실시하였다. 26일 전라북도 아동 · 여성안전지역연대 가정폭력 추방주간 합동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장충석, 김경선, 김성중, 문승현, 박병건, 한지영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중구지부

정수경, 이재경, 김창건, 홍지혜, 정형준, 이동건, 백존익, 이효재, 여지은, 김영옥, 이수희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진주지부

양임석, 장진호, 류기정, 정동윤 변호사가 법률상담 및 소송구조봉사를 하였다.

2019년 10월 지부 상담통계

구분 / 지부	총 건수	법률상담	법률구조		
			화해 조정	소장 등 서류작성	소송구조
강릉 (033) 652-9555	158	151	5	2	
구리 · 남양주 (031) 551-9976	422	49	372		1
군산 (063) 442-1560	136	121	15		
대구 (053) 745-4501	974	837	132		5
대전 (042) 520-5258	215	204		11	
동해 (033) 535-0188	124	123			1
목포 (061) 273-2514	168	163	1		4
부천 (032) 667-2314	381	268	113		
성남 (031) 707-6661	469	390	72	4	3
송도 (032) 834-1369	202	84	111	4	3
수원 (031) 243-4600	334	306	22		6
순천 (061) 753-9910	184	177	7		
안동 (054) 856-4200	149	116	33		
울산 (052) 246-9568	130	122	2	1	5
익산 (063) 851-5113	238	236			2
인천 (032) 865-1120	243	99	135	5	4
전주 (063) 244-2930	212	210			2
정읍 (063) 535-3705	138	135			3
제천 (043) 644-5690	94	87		1	6
중구 (02) 2238-6554	312	312			
진주 (055) 746-7975	163	106	52		5
창원 · 마산 (055) 261-0280	300	291	8	1	
청주 (043) 257-0088	198	135	55	8	
춘천 (033) 257-4688	300	300			
태백 (033) 554-4004	171	171			
평택 · 안성 (031) 611-4251	166	140	24	2	
포항 (054) 283-7555	51	51			
지부총상담	6,632	5,384	1,159	39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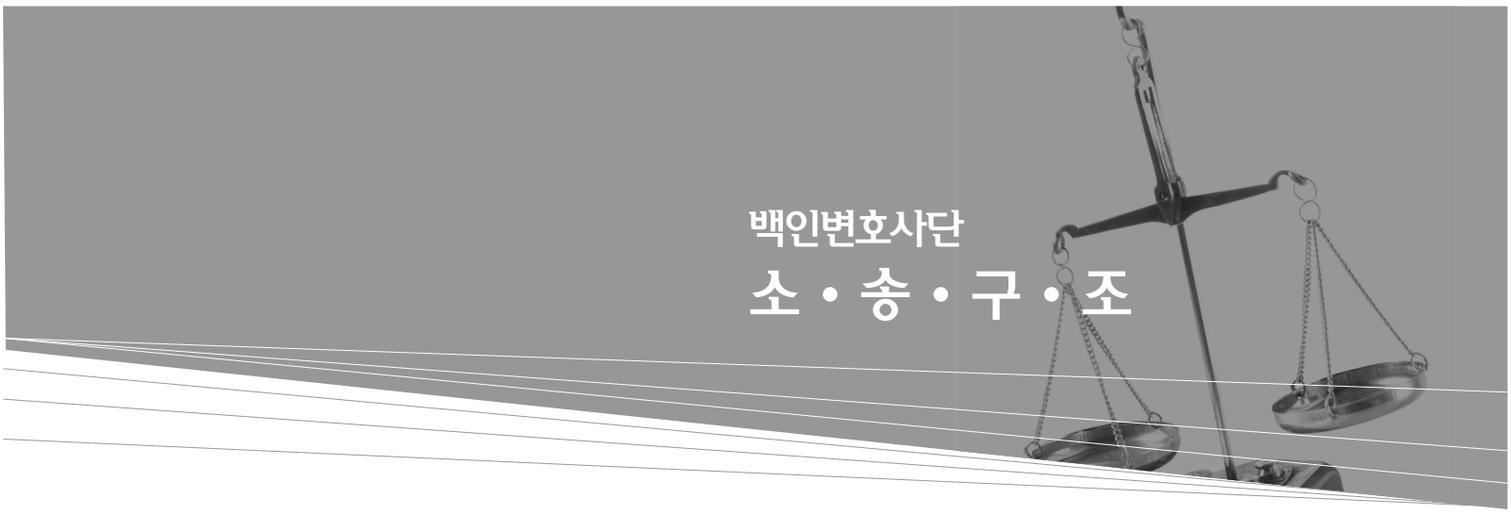

백인변호사단

소 • 송 • 구 • 조

완결된 소송구조 사건

혼인신고만 했을 뿐 장기간 별거로 연락이 끊긴 미국인 남편과의 이혼 판결

법률구조 2019-113

담당 : 권성희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내용 : 원고(여, 74세)와 피고(남, 80세)는 1983년 5월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부부이다. 1983년경 원고는 미국 이민을 준비하다 결혼중개업자의 소개로 미국인인 피고와 혼인신고를 마쳤다. 그 후 원고는 전혼 자녀들과 함께 미국에서 생활하다 1996년경 질병으로 한국에 입국하였다. 원고는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지정되어 영구 임대아파트에서 지내고 있었다. 그런데 최근 임대아파트 재계약 과정에서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가 존재하여 재계약이 어려울 수 있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서울가정법원 2019. 8. 28.)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갑작스럽게 양육비 지급을 중단한 부에 대한 양육비 심판청구에서 화해권고결정

법률구조 2019-115

담당 : 배준영 변호사

사건명 : 양육비

내용 : 청구인(여, 46세)과 상대방(남, 54세)은 2006년 혼인하여 슬하에 사건본인(여, 13세)을 두었으나 2013년 협의이혼하였다. 이혼 당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상대방이 지정되었으나 사건본인의 건강 문제로 2018년 6월경부터 사건본인은 청구인과 함께 지내게 되었고, 친권자 변경 심판청구를 통하여 2019년 2월 친권자 및 양육자가 청구인으로 변경되었다. 사건본인의 치료비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이 되자 상대방은 협의 하에 신용카드를 청구인에게 주어 사건본인의 치료비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그러던 중 사건본인은 계속되는 치료를 힘들어하여 담당의사와 상의한 뒤 치료를 일시 중단하였다가 시간을 두고 다시 치료를 받기로 하고, 치료를 쉬는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사건본인의 교육비 등을 상대방의 카드로 사용하였다. 2019년 3월경 사건본인과 상대방이 사소한 일로 다투게 되었고 상대방은 이를 중재하던 청구인과도 말다툼을 하였다. 이후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주었던 신용카드의 사용을 정지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겠다며 연락을 끊었다. 현재 청구인은 텔레마케터로 근무하며 월 130만 원 정도의 소득이 있다. 그러나 계속 발생할 사건본인의 병원비, 교육비 등을 혼자 부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청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화해권고결정(광주가정법원 2019. 10. 14.)

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19. 4. 1.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700,000원을 매월 말일 지급한다.
2.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혼인신고 후 입국하지 않은 중국인 아내와의 이혼 화해권고결정

법률구조 2019-176

담당 : 서지연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내용 : 원고(남, 72세)와 피고(여, 65세)는 2005년 5월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부부이다. 원고는 지인의 소개로 중국에서 중국인인 피고를 만났다. 피고가 혼인신고를 마치면 한국에 입국하겠다고 약속하여 원고는 피고와 혼인할 의사로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쳤다. 그러나 그 후 피고는 연락이 두절되었고, 현재까지 한국에 입국하지 않고 있다. 원고는 생활고로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지정 신청을 하고자 했으나 법률상 배우자가 존재하여 신청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화해권고결정(서울가정법원 2019. 9. 11.)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사기와 보증으로 인해 과도한 채무가 발생한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법률구조 2019-207

담당 : 이수연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남, 85세)은 1996년경 보험영업을 하던 중 지인의 권유로 분양투자를 하게 되었다. 지인은 선착순으로 분양 기회가 주어진다고 재촉하였고 마음이 급해진 신청인은 다급하게 분양신청을 하면서 인감증명서를 비롯한 대출에 필요한 서류들을 지인에게 넘겨주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신청인은 몇 번이나 분양아파트에 방문하여 건설회사의 대표를 만나보고, 실물을 직접 확인하였다. 그러나 신청인이 확인한 것들은 모두 거짓이었으며 건설회사가 고의로 부도를 내면서 신청인은 고스란히 채무를 떠안게 되었다. 신청인은 처음부터 존재하지도 않았던 물건에 대출을 해준 금융권에 문제가 있다고 하소연해봤으나 대출서류를 직접 작성하였기 때문에 이를 변제해야 한다는 답변만 들었다. 설상가상으로 같은 시기에 보증까지 잘못 서면서 보증채무까지 떠맡게 되었다. 위 두 사건으로 신청인은 채무변제에 최선을 다하였지만 2억 원에 달하는 채무를 변제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고, 고령으로 인해 더 이상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면서 채무지급불능상태가 되었다. 이렇듯 사기와 보증으로 과도한 채무가 발생한 신청인은 독촉에서 벗어나 안정된 삶을 되찾기 위해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19. 10. 28.)

채무자를 면책한다.

건강악화로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법률구조 2019-249

담당 : 박수열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남, 65세)은 1980년경 대출을 받아 자영업을 시작하였으나 경험부족으로 적자가 지속되어 폐업하였다. 이후 신청인은 잔존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택시운전, 보따리장사를 하였으나 소득이 적어 완전히 해결할 수 없었고 집을 매도하게 되었다. 그렇게 채무를 정리하고 전셋집으로 이사한 후 재기를 위해 노력하던 신청인은 2011년경 간내 담도암이라는 판정을 받게 되었다. 치료가 최우선이었던 신청인은 일을 그만둔 후 수술을 받았고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 그 기간 동안 소득이 없던 신청인은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생활하였다. 그러다 2012년경 사업을 크게 하는 지인의 부탁으로 2억 원을 빌려주었지만 결국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 전 재산을 허망하게 잃어버린 신청인은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어 대출을 받아야만 하였다. 또한 이 사건으로 2013년경 배우자와 잦은 다툼으로 결국 이혼까지 하게 되었다. 이후 건강을 회복한 신청인은 다시 보따리장사를 시작하였지만,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았고 일감도 없어 그만두어야 하였다. 이후 고시원에서 거주하며 외롭게 생활하던 신청인은 2018년경 폐암수술을 받으면서 지급불능상태가 되었다. 이렇듯

건강악화로 더 이상 채무를 변제할 수 없게 된 신청인은 6천만 원에 달하는 채무를 해결할 길이 없어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19. 10. 28.)

채무자를 면책한다.

양육비 지급 및 면접교섭을 회피한 부에 대하여 이행명령 결정

법률구조 2019-301

담당 : 박준혁 변호사

사건명 : 이행명령

내용 : 신청인(여, 36세)은 2008년 10월 피신청인(남, 38세)과 혼인하여 슬하에 사건본인(여, 10세)을 두었으나 2016년 5월 협의이혼하였다. 당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는 신청인이 지정되었으며, 피신청인은 이혼신고 다음날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30만 원을 매월 20일 지급하는 것으로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되었다. 피신청인은 위 부담조서에 따라 2016년 5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양육비를 지급하여 왔으나 2018년 5월에 20만 원을 마지막으로 지급하고, 현재까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신청인은 위와 같은 피신청인의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해 사건본인의 양육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 피신청인에게 양육비 지급을 요청하기 위하여 연락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사건본인을 만나는 것도 귀찮아하며, 연락을 받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신청인은 미지급된 사건본인의 양육비에 대한 이행명령을 신청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결정(대구가정법원 2019. 11. 8.)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법원 2016호협000 양육비 부담조서에 기한 의무의 이행으로서 미지급 양육비 중 900,000원을 2020. 1. 31.까지 지급하라.

2. 신청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조경애 법률구조 1부장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법률구조

법률상담

가사, 민사, 형사, 파산사건 등 법률문제 전반에 걸쳐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면접, 서신 및 전화 · 지상 · 순회 · 인터넷 · 출장 · 다문화 가정을 위한 영어상담 등 다양한 상담창구가 개설되어 있다. 직장인을 위한 야간상담도 매주 월요일마다 있다.

화해조정과 소장작성

분쟁해결을 위한 최우선의 방법으로 당사자들과의 대화를 통한 화해조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대서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간단한 소송 관련서류를 무료로 작성해 준다.

소송구조

상담결과 소송이 필요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무료 소송구조를 제공하고 있다. 무료소송구조는 상담소 소속 변호사와 공익법무관 그리고 자원봉사 변호사들로 구성된 백인 변호사단 소속 변호사들이 수행하고 있으며, 취약계층과 가정폭력피해여성,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등 다양한 계층들을 대상으로 가사소송 전반은 물론 필요한 경우 민사, 형사 사건까지 포괄하고 있다.

다문화가정을 위한 영어상담

다문화가정의 법률구조를 위하여 외국변호사 자원봉사단을 구성하여 영어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개인파산 · 면책 및 개인회생 신청 무료 지원

개인신용불량자들의 조속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개인파산 및 면책, 개인회생 등의 법적절차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서울가정법원 종합민원실 출장상담

서울가정법원 종합민원실에서 무료 출장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2019년 12월 교육부

이혼, 현실과 미래 더 생각해보기

부부갈등 및 이혼에 관해 보다 차분하고 객관적으로 심사숙고함으로써 후회 없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 상담프로그램

▶ 대상 : 결혼생활의 어려움으로 이혼을 고민하고 있는 남녀 (당사자 외 참여불가)
▶ 내용 : – 1단계 : 법률상담 및 이혼 관련 비디오시청
매주 평일 상시
– 2단계 : 집단심리상담
(이혼 전 교육 1단계 참가자, 사전예약 필수)
연중 매월 둘째 · 넷째 월요일 오후 2시 ~ 4시
(2020년 1월 13일)
▶ 강사 : 김명순 소장 (세은심리상담연구소)

교사들을 위한 법 교육– 교원직무연수

가족법 · 가정폭력특별법교육과 폭력예방교육을 통해 전국 초 · 중 · 고 교원의 전문능력 함양을 돕는 연수 프로그램

▶ 연수과정명 : 법 교육 및 폭력예방교육 (가정폭력, 아동폭력, 학교폭력)
▶ 과정구분 : 전문성향상과정
▶ 연수기간 : 2020년 1월 14일(화) ~ 16일(목)
▶ 연수기간 : 15시간(1학점, 성적산출 안함)
▶ 연수대상 : 서울 · 전국 초 · 중 · 고 교원 30명(선착순 모집)
▶ 연수경비(1인당 자비 부담액) : 무료
▶ 교과과정

가족법
가족법 변천사 및 법률구조사 / 약혼 · 혼인 · 사실혼에 관한 법률 / 이혼 · 친권에 관한 법률 / 친자 · 양자 · 친양자에 관한 법률 / 부양에 관한 법률 / 성년후견에 관한 법률 / 상속 · 유언 · 유류분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등록법
가족관계등록부 / 출생신고 / 혼인신고 / 등록부 정정 등

가정폭력특별법 및 상담사례연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상담사례연구

임대차 및 채권 · 채무에 관한 법률

폭력예방교육의 이론과 실제

생활법률강좌

▶ 일시 : 연중(요청 시 사전일정 조율)
▶ 신청방법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교육부 (전화 또는 메일로 신청)

– 전문가를 위한 출장 법 교육
1366 상담원, 이주여성 지원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전문상담원에게 필요한 가족관련 법률 · 가정폭력특별법 등을 강의함으로써 직무전문성을 향상시키는 출장 법 교육

– 학교현장을 찾아가는 법 교육 및 폭력예방교육
초 · 중 · 고교 학생 및 학부모 · 교사들에게 가족관련 법률 및 폭력예방교육을 통해 성평등 의식을 함양하는 출장 법 교육

– 학생들을 위한 법률구조 체험교육
초 · 중 · 고교 학생들에게 법률구조 · 가족관련 법률 및 가정폭력특별법 강의를 통해 법률구조 제도에 대한 이해와 성평등 의식을 함양하는 체험교육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김병후 원장과 함께하는 부부갈등과 상처 다루기–

가족 · 부부상담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 행복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상처받은 관계를 치유하기 위한 공개강좌 프로그램

▶ 일시 : 2019년 1월~12월 매월 셋째 목요일 오후 3시~5시(8월 휴강)
▶ 대상 : 참여를 원하는 사람 누구나 (수시접수 가능)
▶ 강사 : 김병후 원장 (정신과 전문의, 김병후정신건강의학과)
▶ 장소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8층 강의실
▶ 강의 일정 및 주제

일시	강의제목
12월 19일(목)	10. 마음과 언어

감성학교–마음 깊은 곳에서 이해하기 : 무료공개강좌

내 감정을 잘 느끼고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See), 해결하며(Solve), 유지할 수 있도록(Sustain) 돕는 교육강좌

▶ 일시 : 매월 둘째 목요일 오후 3시 ~ 5시
▶ 대상 : 참여를 원하는 사람 누구나
▶ 강의 일정 및 주제

일 정	강 의 제 목	강 사
12월 12일	소속감 : 연결의 기쁨	정윤경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전문연구원)

※ 일정 및 교육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진행 상 반드시 사전접수 바랍니다.

●장 소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8층 강의실(변경될수 있으므로 사전문의 요망) ●교육문의 및 신청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교육부
TEL : 02-782-3601 FAX : 02-780-0485 홈페이지 : www.lawhome.or.kr E-mail : edu@lawhome.or.kr
트위터 : https://www.twitter.com/LegalAidCenter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 ☎ 대표전화 1644-7077

이혼, 현실과 미래 더 생각해보기

부부갈등 및 이혼에 관해 보다 차분하고 객관적으로 심사숙고함으로써 후회 없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 상담프로그램

교사들을 위한 법 교육- 교원직무연수

가족법 · 가정폭력특별법교육과 폭력예방교육을 통해 전국 초 · 중 · 고 교원의 전문능력 함양을 돕는 연수 프로그램

생활법률강좌

- 전문가를 위한 출장 법 교육
- 학교현장을 찾아가는 법 교육 및 폭력예방교육
- 학생들을 위한 법률구조 체험교육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김병후 원장과 함께하는 부부갈등과 상처 다루기-

가족 · 부부상담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 행복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상처받은 관계를 치유하기 위한 공개강좌 프로그램

감성학교-마음 깊은 곳에서 이해하기 : 무료공개강좌

내 감정을 잘 느끼고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See), 해결하며(Solve), 유지할 수 있도록(Sustain) 돕는 교육강좌

이제 모바일에서도 편리하게 사이버상담을 이용하세요. ▷ http://lawhome.or.kr/m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 ☎ 대표전화 1644-7077

●교육문의 및 신청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교육부
T. 02-780-5688~9 F. 02-780-0485 홈페이지 : www.lawhome.or.kr